



(19) 대한민국특허청(KR)
(12) 공개특허공보(A)

(11) 공개번호 10-2008-0106440
(43) 공개일자 2008년12월05일

(51) Int. Cl.
G06F 21/24 (2006.01) *G06Q 30/00* (2006.01)
(21) 출원번호 10-2008-7022770
(22) 출원일자 2008년09월18일
심사청구일자 2008년09월18일
번역문제출일자 2008년09월18일
(86) 국제출원번호 PCT/JP2007/057641
국제출원일자 2007년04월05일
(87) 국제공개번호 WO 2007/116929
국제공개일자 2007년10월18일
(30) 우선권주장
JP-P-2006-00104270 2006년04월05일 일본(JP)

(71) 출원인
가부시키키가이사 웨이스
일본국 교토후 교토시 나카교쿠 가라스마도리오이
케 사가루 도라야쵸 566-1 이몬메이지세이메이비
루
(72) 발명자
코모리, 요리모토
일본국 교토후 교토시 나카교쿠 가라스마도리오이
케 사가루 도라야쵸 566-1 이몬메이지세이메이비
루 주식회사 웨이스
심바이시, 토루
일본국 교토후 교토시 나카교쿠 가라스마도리오이
케 사가루 도라야쵸 566-1 이몬메이지세이메이비
루 주식회사 웨이스
(뒷면에 계속)
(74) 대리인
박종한

전체 청구항 수 : 총 29 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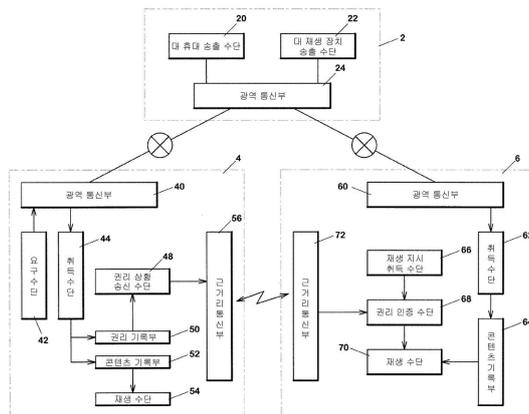
(54) 콘텐츠 제공 시스템

(57) 요약

본 발명은 무권리자에 의한 콘텐츠의 재생을 제한하면서, 권리자에 의한 콘텐츠 재생의 자유도를 높게 할 수 있는 콘텐츠 제공 시스템을 제공하는 것을 과제로 한다.

본 발명에 따르면, 휴대 재생 장치(4)와 재생 장치(6)가 근거리 통신부(56, 72)에 의해 통신을 확립하면, 휴대 재생 장치(4)의 권리 상황 송신 수단(48)은 권리 기억부(50)에 기록되어 있는 권리 데이터에 의거한 권리 상황 데이터를 재생 장치(6)에 송신한다. 재생 장치(6)의 재생 지시 취득 수단(66)은 재생 장치용 콘텐츠에 대한 사용자로부터의 재생 지시를 수취한다. 권리 인증 수단(68)은 휴대 재생 장치(4)로부터 송신되어 온 권리 상황 데이터에 의거하여, 재생 지시가 이루어진 콘텐츠의 권리가 있는지의 여부를 판단한다. 권리가 있다고 판단되면, 재생 수단(70)에 의해, 콘텐츠 기록부(64)에 기록되어 있는 재생 장치용 콘텐츠를 재생한다. 권리가 없다고 판단되면, 재생을 허가하지 않는다.

대표도



(72) 발명자

다나카, 카추야

일본국 교토후 교토시 나카교쿠 가라스마도리오이
케 사가루 도라야쵸 566-1 이몬메이지세이메이비루
주식회사 웨이스

후지, 카즈노부

일본국 교토후 교토시 나카교쿠 가라스마도리오이
케 사가루 도라야쵸 566-1 이몬메이지세이메이비루
주식회사 웨이스

코이소, 미사

일본국 교토후 교토시 나카교쿠 가라스마도리오이
케 사가루 도라야쵸 566-1 이몬메이지세이메이비루
주식회사 웨이스

특허청구의 범위

청구항 1

권리 증명 장치와 재생 장치를 구비한 콘텐츠 제공 시스템에 있어서,
 상기 권리 증명 장치는
 권리 데이터를 기록하기 위한 권리 기록부에 액세스하는 수단과,
 재생 장치와 근거리 통신을 행하기 위한 근거리 통신부를 구비하고,
 상기 재생 장치는
 재생 장치용 콘텐츠를 기록하기 위한 콘텐츠 기록부에 액세스하는 수단과,
 권리 증명 장치와 근거리 통신을 행하기 위한 근거리 통신부와,
 권리 인증 수단에 의해 권리 데이터의 존재가 확인된 재생 장치용 콘텐츠를 재생하는 재생 수단을 구비하고,
 상기 권리 증명 장치 또는 상기 재생 장치 중의 어느 하나에,
 상기 근거리 통신부에 의해 상기 권리 증명 장치와 상기 재생 장치 사이에서 통신을 행하고, 재생하고자 하는 재생 장치용 콘텐츠에 대응하는 권리 데이터가, 상기 권리 증명 장치에 접속된 권리 기록부에 기록되어 있는지의 여부의 권리 판단을 하는 권리 인증 수단을 구비한 것을 특징으로 하는 콘텐츠 제공 시스템.

청구항 2

재생 장치와 함께 콘텐츠 제공 시스템을 구성하는 권리 증명 장치로서,
 재생 장치와 근거리 통신을 행하기 위한 근거리 통신부와,
 권리 데이터를 기록하기 위한 권리 기록부에 액세스하는 수단과,
 상기 근거리 통신부에 의해 상기 재생 장치와의 사이에서 통신을 행하고, 상기 재생 장치에 있어서 재생하고자 하는 재생 장치용 콘텐츠에 대응하는 권리 데이터가, 상기 권리 증명 장치에 접속된 권리 기록부에 기록되어 있는지의 여부의 권리 판단을 하는 권리 인증 수단을 구비한 것을 특징으로 하는 권리 증명 장치.

청구항 3

재생 장치와 함께 콘텐츠 제공 시스템을 구성하는 권리 증명 장치를 컴퓨터에 의해 실현하기 위한 권리 증명 프로그램으로서,
 권리 데이터를 기록하기 위한 권리 기록부에 액세스하는 수단과,
 상기 근거리 통신부에 의해 상기 재생 장치와의 사이에서 통신을 행하고, 상기 재생 장치에 있어서 재생하고자 하는 재생 장치용 콘텐츠에 대응하는 권리 데이터가, 상기 권리 증명 장치에 접속된 권리 기록부에 기록되어 있는지의 여부의 권리 판단을 하는 권리 인증 수단을,
 컴퓨터에 의해 실현하기 위한 권리 증명 프로그램.

청구항 4

권리 증명 장치와 함께 콘텐츠 제공 시스템을 구성하는 재생 장치로서,
 권리 증명 장치와 근거리 통신을 행하기 위한 근거리 통신부와,
 재생 장치용 콘텐츠를 기록하기 위한 콘텐츠 기록부에 액세스하는 수단과,
 상기 근거리 통신부에 의해 상기 권리 증명 장치와의 사이에서 통신을 행하고, 재생하고자 하는 재생 장치용의 콘텐츠에 대응하는 권리 데이터가, 상기 권리 증명 장치에 접속된 권리 기록부에 기록되어 있는지의 여부의 권리 판단을 하는 권리 인증 수단과,
 권리 인증 수단에 의해 권리 데이터의 존재가 확인된 재생 장치용 콘텐츠를 재생하는 재생 수단을 구비한 것을

특징으로 재생 장치.

청구항 5

권리 증명 장치와 함께 콘텐츠 제공 시스템을 구성하는 재생 장치를 컴퓨터에 의해 실현하기 위한 재생 프로그램으로서,

재생 장치용 콘텐츠를 기록하기 위한 콘텐츠 기록부에 액세스하는 수단과,

상기 근거리 통신부에 의해 상기 권리 증명 장치와의 사이에서 통신을 행하고, 재생하고자 하는 재생 장치용의 콘텐츠에 대응하는 권리 데이터가, 상기 권리 증명 장치에 접속된 권리 기록부에 기록되어 있는지의 여부의 권리 판단을 하는 권리 인증 수단과,

권리 인증 수단에 의해 권리 데이터의 존재가 확인된 재생 장치용 콘텐츠를 재생하는 재생 수단을,

컴퓨터에 의해 실현하기 위한 재생 프로그램.

청구항 6

제4항 또는 제5항에 있어서,

상기 권리 증명 장치는 근거리 통신부에 의해, 상기 권리 데이터에 의거한 권리 상황을 나타낸 데이터를 재생 장치에 송신하는 권리 상황 송신 수단을 더 구비하고,

상기 재생 장치의 권리 인증 수단은 권리 증명 장치로부터 수신된 권리 상황을 나타낸 데이터에 의거하여, 상기 권리 판단을 행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장치 또는 프로그램.

청구항 7

제1항 내지 제6항 중의 어느 한 항에 있어서,

상기 권리 기록부는 권리 증명 장치에 접속 가능한 가반성 기록 매체인 것을 특징으로 하는 시스템, 장치 또는 프로그램.

청구항 8

제7항에 있어서,

상기 권리 기록부로서의 가반성 기록 매체에는 재생 장치용 콘텐츠를 특정하기 위한 부호, 및 권리 증명 장치 또는 권리 증명 장치를 사용하는 사용자를 특정하기 위한 부호를 포함하는 권리 데이터가 기록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시스템, 장치 또는 프로그램.

청구항 9

제7항에 있어서,

상기 권리 데이터는 재생 장치용 콘텐츠를 특정하기 위한 부호를 포함하는 권리 데이터를, 권리 증명 장치 또는 권리 증명 장치를 사용하는 사용자를 특정하기 위한 부호에 의해 암호화한 권리 데이터가 기록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시스템, 장치 또는 프로그램.

청구항 10

제9항에 있어서,

상기 권리 인증 수단은 상기 재생 장치와 통신이 확립되어 있는 권리 증명 장치 또는 당해 권리 증명 장치를 사용하는 사용자를 특정하기 위한 부호를 취득하고, 당해 부호에 의거하여, 상기 가반성 기록 매체로부터 판독한 권리 데이터를 복호화하고, 재생하고자 하는 콘텐츠에 대응하는 올바른 권리 데이터가 복원되는지의 여부를 판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시스템, 장치 또는 프로그램.

청구항 11

제1항 내지 제6항 중의 어느 한 항에 있어서,

상기 권리 증명 장치는 상기 권리 기록부를 구비하여 구성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시스템, 장치 또는 프로그램.

청구항 12

제1항 내지 제11항 중의 어느 한 항에 있어서,

상기 콘텐츠 기록부는 재생 장치에 접속 가능한 가반성 기록 매체인 것을 특징으로 하는 시스템, 장치 또는 프로그램.

청구항 13

제1항 내지 제11항 중의 어느 한 항에 있어서,

재생 장치는 콘텐츠 기록부를 구비하여 구성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시스템, 장치 또는 프로그램.

청구항 14

제1항 내지 제13항 중의 어느 한 항에 있어서,

재생 장치용 콘텐츠는 재생 장치 또는 재생 장치에 접속된 기기와 광역 통신 가능한 서버 장치로부터 송신된 것임을 특징으로 하는 시스템, 장치 또는 프로그램.

청구항 15

제1항 내지 제14항 중의 어느 한 항에 있어서,

권리 증명 장치는 근거리 통신부에 의해, 재생 장치에 대하여 콘텐츠 재생 지시를 송신하는 재생 지시 수단을 더 구비하고,

재생 장치는 근거리 통신부에 의해, 권리 증명 장치로부터의 재생 지시를 받는 재생 지시 취득 수단을 더 구비하고,

권리 인증 수단은 권리 증명 장치로부터 재생 지시가 이루어진 재생 장치용 콘텐츠에 대하여 권리 증명 장치가 권리를 갖고 있는지를 판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시스템, 장치 또는 프로그램.

청구항 16

제6항 내지 제15항 중의 어느 한 항에 있어서,

권리 증명 장치는 근거리 통신부에 의해, 재생 장치와의 사이에서 통신 개시 처리를 행하는 통신 개시 처리 수단을 가지며,

권리 상황 송신 수단은 통신 개시 처리 수단에 의한 통신 개시 시에, 권리 데이터에 의거한 권리 상황을 나타낸 데이터를 재생 장치에 송신하고,

재생 장치는 근거리 통신부에 의해 권리 상황을 나타낸 데이터를 수신하고, 일시 기억부에 기억함과 아울러, 권리 증명 장치와의 사이의 통신 종료에 의해 당해 권리 상황 데이터를 소거하는 기억 제어 수단을 갖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시스템, 장치 또는 프로그램.

청구항 17

제6항 내지 제16항 중의 어느 한 항에 있어서,

권리 상황 송신 수단은 재생 장치로부터의 요구에 따라서 권리 데이터에 의거한 권리 상황을 나타낸 데이터를, 재생 장치에 송신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시스템, 장치 또는 프로그램.

청구항 18

제1항 내지 제17항 중의 어느 한 항에 있어서,

권리 증명 장치는

권리 발행 장치와 광역 통신 또는 근거리 통신을 행하기 위한 통신부와,
통신부에 의해, 권리 취득 요구를 권리 발행 장치에 송신하는 요구 수단과,
통신부에 의해, 권리 발행 장치로부터 권리 데이터를 수신하는 취득 수단을 더 구비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시스템, 장치 또는 프로그램.

청구항 19

제1항 내지 제17항 중의 어느 한 항에 있어서,
권리 증명 장치는 휴대 재생 장치이며,
상기 휴대 재생 장치는
서버 장치와 광역 통신을 행하기 위한 광역 통신부와,
광역 통신부에 의해, 권리 취득 요구를 서버 장치에 송신하는 요구 수단과,
광역 통신부에 의해, 서버 장치로부터 권리 데이터 및 휴대용 콘텐츠를 수신하는 취득 수단과,
취득 수단에 의해 취득한 휴대용 콘텐츠를 기록하는 콘텐츠 기록부와,
콘텐츠 기록부에 기록되어 있는 휴대용 콘텐츠를 재생하는 재생 수단과,
근거리 통신부에 의해, 재생 장치에 대하여 콘텐츠 재생 지시를 송신하는 재생 지시 수단을 더 구비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시스템, 장치 또는 프로그램.

청구항 20

제19항에 있어서,
권리 인증 수단은 재생 지시가 이루어진 재생 장치용 콘텐츠에 대응하는 권리 데이터가 없다고 판단된 경우에는, 근거리 통신부에 의해 휴대 재생 장치에 권리 부존재의 취지를 송신하고,
휴대 재생 장치는 근거리 통신부에 의해 권리 부존재의 취지를 권리 인증 수단으로부터 받아서, 권리 취득 제안 처리를 개시하는 취득 처리 개시 수단을 더 구비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시스템, 장치 또는 프로그램.

청구항 21

제1항 내지 제20항 중의 어느 한 항에 있어서,
권리 인증 수단은 이하의 A) 또는 B)에 의해 재생의 허가·불허가를 행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시스템, 장치 또는 프로그램.
A) 재생 지시의 대상인 재생 장치용 콘텐츠에 대응하는 권리 데이터가 있다고 판단된 경우에는 재생 수단에 재생 허가 신호를 부여함으로써 재생을 허가하고, 상기 권리 데이터가 없다고 판단된 경우에는 재생 불허가 신호를 부여하거나, 재생 허가 신호를 부여하지 않음으로써 재생을 허가하지 않는다.
B) 재생 지시의 대상인 재생 장치용 콘텐츠에 대응하는 권리 데이터가 있다고 판단된 경우에는 재생 수단에 재생 허가 신호를 부여하거나, 재생 불허가 신호를 부여하지 않음으로써 재생을 허가하고, 상기 권리 데이터가 없다고 판단된 경우에는 재생 불허가 신호를 부여함으로써 재생을 허가하지 않는다.

청구항 22

제1항 내지 제21항 중의 어느 한 항에 있어서,
상기 권리 데이터는 암호화된 재생 장치용 콘텐츠를 복호화하기 위한 키이며,
권리 인증 수단은 재생 지시의 대상인 재생 장치용 콘텐츠의 키가 존재하면, 당해 키를 재생 수단에 부여함으로써 복호화된 재생 장치용 콘텐츠의 재생을 허가하고, 재생 지시의 대상인 재생 장치용 콘텐츠의 키가 존재하지 않으면, 당해 키를 재생 수단에 부여하지 않음으로써 복호화된 재생 장치용 콘텐츠의 재생을 허가하지 않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시스템, 장치 또는 프로그램.

청구항 23

제1항 내지 제22항 중의 어느 한 항에 있어서,

권리 증명 장치는 비접촉식 IC 카드, 휴대 전화, PDA 중의 어느 하나인 것을 특징으로 하는 시스템, 장치 또는 프로그램.

청구항 24

제1항 내지 제23항 중의 어느 한 항에 있어서,

재생 장치는 비디오 재생 장치, 하드 디스크 레코더, DVD 재생 장치, 텔레비전 수신 장치, 스테레오 장치, 휴대형 음악 재생 장치, 퍼스널 컴퓨터, 카 내비게이션, 가정용 게임기 중의 어느 하나인 것을 특징으로 하는 시스템, 장치 또는 프로그램.

청구항 25

제1항 내지 제24항 중의 어느 한 항에 있어서,

상기 재생 장치는 재생 장치 본체와 근거리 통신 장치를 구비하고 있으며,

상기 재생 장치 본체는 재생 장치용 콘텐츠를 기록하기 위한 콘텐츠 기록부에 액세스하는 수단과, 권리 인증 수단에 의해 권리 데이터의 존재가 확인된 재생 장치용 콘텐츠를 재생하는 재생 수단을 구비하며,

상기 근거리 통신 장치는 권리 증명 장치와 근거리 통신을 행하기 위한 근거리 통신부를 구비한 것을 특징으로 하는 시스템, 장치 또는 프로그램.

청구항 26

제25항에 있어서,

상기 재생 장치 본체는 근거리 통신부에 의해 권리 증명 장치와 통신하고, 광역 통신 가능한 권리 증명 장치를 통하여, 서버 장치로부터 재생 장치용 콘텐츠를 취득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시스템, 장치 또는 프로그램.

청구항 27

제1항 내지 제26항 중의 어느 한 항에 있어서,

상기 재생 장치는

근거리 통신 장치와,

각각이 당해 근거리 통신 장치에 통신 가능하게 접속된 복수개의 재생 기기를 구비하여 구성되고,

상기 근거리 통신 장치에 근거리 통신부 및 권리 인증 수단이 설치되어 있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시스템, 장치 또는 프로그램.

청구항 28

제1항 내지 제27항 중의 어느 한 항에 있어서,

권리 증명 장치 및 재생 장치의 상기 근거리 통신부는 무선 또는 유선 통신을 행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시스템, 장치 또는 프로그램.

청구항 29

제1항 내지 제28항 중의 어느 한 항에 있어서,

상기 재생 장치는 재생 장치용 콘텐츠 재생의 중단 지령을 받으면 콘텐츠의 중단 위치를 권리 증명 장치에 송신하는 수단을 구비하고,

권리 증명 장치는 수신된 중단 위치를 기록부에 기록하는 수단을 구비하고 있으며,

권리 증명 장치는 재생 장치용 콘텐츠의 재생 지령을 재생 장치에 송신할 때에, 당해 재생 장치용 콘텐츠에 대

응하여 기록되어 있는 중단 위치를 아울러 송신하고,

재생 장치는 재생 지령과 함께 보내져 오는 중단 위치로부터 당해 재생 장치용 콘텐츠의 재생을 개시하는 수단을 구비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시스템, 장치 또는 프로그램.

명세서

기술분야

<1> 본 발명은 콘텐츠를 제공하는 시스템에 관한 것으로, 특히 그 권리 관리에 관한 것이다.

배경기술

<2> 화상이나 음악 등의 콘텐츠를 제공할 때에, 그 권리를 관리하는 시스템으로서 특허문헌 1과 같은 기구가 제안되어 있다. 이 기구는 다음과 같이 하여 권리를 관리하고 있다. 사용자는 판매점에서 희망하는 콘텐츠의 카드를 구입한다. 이 카드에는 코드가 인쇄되어 있으며, 사용자는 휴대 전화 등으로부터 지정된 서버에 액세스하고, 코드를 입력한다. 서버에서는, 콘텐츠와 코드의 대응 관계를 인증하고, 올바른 코드라면, 사용자의 휴대 전화에 콘텐츠를 다운 로드한다. 이후, 사용자는 다운 로드된 콘텐츠를 휴대 전화에서 재생할 수 있다.

<3> 특허문헌 1 : 일본 특허공개 2004-171377호 공보

발명의 상세한 설명

<4> (발명이 해결하고자 하는 과제)

<5> 그러나, 상기와 같은 종래의 기술에는 다음과 같은 문제가 있었다. 특허문헌 1에 개시된 기술에서는, 콘텐츠의 구입 시에만 권리의 확인이 행해질 뿐이고, 구입 후의 부정 카피 등에 의한 재생을 관리할 수는 없다. 한편, 각자가 다운 로드한 콘텐츠밖에 재생할 수 없으며, 동일한 콘텐츠이더라도 타인의 기기에 다운 로드된 콘텐츠는 재생할 수 없다는 제한이 있었다. 즉 콘텐츠의 재생에 제한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권리 관리가 충분하지 않고, 콘텐츠의 권리자, 이용자의 쌍방에게 있어서, 반드시 바람직한 기구라고는 할 수 없다.

<6> 본 발명은 상기와 같은 문제점을 해결하여, 무권리자에 의한 콘텐츠의 재생을 제한하면서, 권리자에 의한 콘텐츠 재생의 자유도를 높일 수 있는 콘텐츠 제공 시스템을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7> (과제를 해결하기 위한 수단)

<8> (1)본 발명에 따른 권리 증명 장치와 재생 장치를 구비한 콘텐츠 제공 시스템은

<9> 상기 권리 증명 장치는 권리 데이터를 기록하기 위한 권리 기록부에 액세스하는 수단과, 재생 장치와 근거리 통신을 행하기 위한 근거리 통신부를 구비하고,

<10> 상기 재생 장치는 재생 장치용 콘텐츠를 기록하기 위한 콘텐츠 기록부에 액세스하는 수단과, 권리 증명 장치와 근거리 통신을 행하기 위한 근거리 통신부와, 권리 인증 수단에 의해 권리 데이터의 존재가 확인된 재생 장치용 콘텐츠를 재생하는 재생 수단을 구비하고,

<11> 상기 권리 증명 장치 또는 상기 재생 장치 중의 어느 하나에, 상기 근거리 통신부에 의해 상기 권리 증명 장치와 상기 재생 장치 사이에서 통신을 행하고, 재생하고자 하는 재생 장치용 콘텐츠에 대응하는 권리 데이터가, 상기 권리 증명 장치에 접속된 권리 기록부에 기록되어 있는지의 여부의 권리 판단을 하는 권리 인증 수단을 구비한 것을 특징으로 하고 있다.

<12> 따라서, 권리 증명 장치가 재생 장치의 근방에 있는 경우에만 콘텐츠의 재생이 허가된다. 따라서, 부정 카피에 의한 재생을 방지할 수 있음과 아울러, 권리를 소유하는 권리 증명 장치를 갖고 있으면, 다른 장소에 있는 재생 장치 내의 콘텐츠에 대해서도 재생을 행할 수 있다.

<13> (6)본 발명에 따른 콘텐츠 제공 시스템은 권리 증명 장치는 근거리 통신부에 의해, 상기 권리 데이터에 의거한 권리 상황을 나타낸 데이터를 재생 장치에 송신하는 권리 상황 송신 수단을 더 구비하고, 상기 재생 장치의 권리 인증 수단은 권리 증명 장치로부터 수신된 권리 상황을 나타낸 데이터에 의거하여, 상기 권리 판단을 행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고 있다.

<14> (7)본 발명에 따른 콘텐츠 제공 시스템은 권리 기록부는 권리 증명 장치에 접속 가능한 가반성 기록 매체인 것

을 특징으로 하고 있다.

- <15> 따라서, 복수개의 권리 기록부를 준비함으로써, 더욱 많은 권리 데이터를 기록할 수 있다.
- <16> (8)본 발명에 따른 콘텐츠 제공 시스템은 권리 기록부로서의 가반성 기록 매체에는 재생 장치용 콘텐츠를 특정하기 위한 부호, 및 권리 증명 장치 또는 권리 증명 장치를 사용하는 사용자를 특정하기 위한 부호를 포함하는 권리 데이터가 기록되는 것을 특징으로 하고 있다.
- <17> 따라서, 권리 데이터의 운반을 가능하게 하면서, 부정 사용을 방지할 수 있다.
- <18> (9)본 발명에 따른 콘텐츠 제공 시스템은 권리 데이터는 재생 장치용 콘텐츠를 특정하기 위한 부호를 포함하는 권리 데이터를, 권리 증명 장치 또는 권리 증명 장치를 사용하는 사용자를 특정하기 위한 부호에 의해 암호화한 권리 데이터가 기록되는 것을 특징으로 하고 있다.
- <19> 따라서, 권리 데이터의 운반을 가능하게 하면서, 부정 사용을 방지할 수 있다.
- <20> (10)본 발명에 따른 콘텐츠 제공 시스템은 권리 인증 수단은 상기 재생 장치와 통신이 확립되어 있는 권리 증명 장치 또는 당해 권리 증명 장치를 사용하는 사용자를 특정하기 위한 부호를 취득하고, 당해 부호에 의거하여, 상기 가반성 기록 매체로부터 판독한 권리 데이터를 복호화하고, 재생하고자 하는 콘텐츠에 대응하는 올바른 권리 데이터가 복원되는지의 여부를 판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고 있다.
- <21> 따라서, 권리 증명 장치를 갖는 정규 사용자만이 당해 콘텐츠를 재생할 수 있다.
- <22> (11)본 발명에 따른 콘텐츠 제공 시스템은 권리 증명 장치는 상기 권리 기록부를 구비하여 구성되는 것을 특징으로 하고 있다.
- <23> (12)본 발명에 따른 콘텐츠 제공 시스템은 콘텐츠 기록부는 재생 장치에 접속 가능한 가반성 기록 매체인 것을 특징으로 하고 있다.
- <24> 따라서, 당해 가반성 기록 매체를 통하여 콘텐츠를 취득할 수 있다.
- <25> (13)본 발명에 따른 콘텐츠 제공 시스템은 재생 장치는 콘텐츠 기록부를 구비하여 구성되는 것을 특징으로 하고 있다.
- <26> (14)본 발명에 따른 콘텐츠 제공 시스템은 재생 장치용 콘텐츠는 재생 장치 또는 재생 장치에 접속된 기기와 광역 통신 가능한 서버 장치로부터 송신된 것임을 특징으로 하고 있다.
- <27> 따라서, 광역 통신에 의해 서버 장치로부터 콘텐츠를 취득할 수 있다.
- <28> (15)본 발명에 따른 콘텐츠 제공 시스템은 권리 증명 장치는 근거리 통신부에 의해, 재생 장치에 대하여 콘텐츠 재생 지시를 송신하는 재생 지시 수단을 더 구비하고, 재생 장치는 근거리 통신부에 의해, 권리 증명 장치로부터의 재생 지시를 받는 재생 지시 취득 수단을 더 구비하고, 권리 인증 수단은 권리 증명 장치로부터 재생 지시가 이루어진 재생 장치용 콘텐츠에 대하여 권리 증명 장치가 권리를 갖고 있는지를 판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고 있다.
- <29> 따라서, 권리 증명 장치의 측으로부터 재생 장치에 대하여 콘텐츠의 재생 지시를 행할 수 있다.
- <30> (16)본 발명에 따른 콘텐츠 제공 시스템은 권리 증명 장치는 근거리 통신부에 의해, 재생 장치와의 사이에서 통신 개시 처리를 행하는 통신 개시 처리 수단을 가지며,
- <31> 권리 상황 송신 수단은 통신 개시 처리 수단에 의한 통신 개시 시에, 권리 데이터에 의거한 권리 상황을 나타낸 데이터를 재생 장치에 송신하고,
- <32> 재생 장치는 근거리 통신부에 의해 권리 상황을 나타낸 데이터를 수신하고, 일시 기억부에 기억함과 아울러, 권리 증명 장치와의 사이의 통신 종료에 의해 당해 권리 상황 데이터를 소거하는 기억 제어 수단을 갖는 것을 특징으로 하고 있다.
- <33> 따라서, 권리 증명 장치의 권리에 의거한 콘텐츠의 재생이 종료된 후에는 권리 상황을 도시한 데이터가 삭제되고, 부정하게 콘텐츠가 재생될 우려가 없다.
- <34> (17)본 발명에 따른 콘텐츠 제공 시스템은 권리 상황 송신 수단은 재생 장치로부터의 요구에 따라서 권리 데이터에 의거한 권리 상황을 나타낸 데이터를, 재생 장치에 송신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고 있다.

- <35> 따라서, 재생 장치의 측이 주도권을 가지고, 권리 증명 장치에 대하여 권리 상황 데이터의 송신을 요구할 수 있다.
- <36> (18)본 발명에 따른 콘텐츠 제공 시스템은 권리 증명 장치가, 권리 발행 장치와 광역 통신 또는 근거리 통신을 행하기 위한 통신부와, 통신부에 의해, 권리 취득 요구를 권리 발행 장치에 송신하는 요구 수단과, 통신부에 의해, 권리 발행 장치로부터 권리 데이터를 수신하는 취득 수단을 더 구비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고 있다.
- <37> (19)본 발명에 따른 콘텐츠 제공 시스템은 권리 증명 장치는 휴대 재생 장치이며, 상기 휴대 재생 장치는 서버 장치와 광역 통신을 행하기 위한 광역 통신부와, 광역 통신부에 의해, 권리 취득 요구를 서버 장치에 송신하는 요구 수단과, 광역 통신부에 의해, 서버 장치로부터 권리 데이터 및 휴대용 콘텐츠를 수신하는 취득 수단과, 취득 수단에 의해 취득한 휴대용 콘텐츠를 기록하는 콘텐츠 기록부와, 콘텐츠 기록부에 기록되어 있는 휴대용 콘텐츠를 재생하는 재생 수단과, 근거리 통신부에 의해, 재생 장치에 대하여 콘텐츠 재생 지시를 송신하는 재생 지시 수단을 더 구비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고 있다.
- <38> 따라서, 휴대 재생 장치에 의해 휴대용 콘텐츠를 재생할 수 있음과 아울러, 권리를 보유하는 휴대 재생 장치가 근방에 없으면 재생 장치에 있어서의 재생 장치용 콘텐츠의 재생이 허가되지 않는다. 따라서, 부정 카피에 의한 재생을 방지할 수 있음과 아울러, 권리를 보유하는 휴대 재생 장치를 갖고 있으면, 다른 장소에 있는 재생 장치 내의 콘텐츠에 대해서도 재생을 행할 수 있다.
- <39> (20)본 발명에 따른 콘텐츠 제공 시스템은 권리 인증 수단은 재생 지시가 이루어진 재생 장치용 콘텐츠에 대응하는 권리 데이터가 없다고 판단된 경우에는, 근거리 통신부에 의해 휴대 재생 장치에 권리 부존재의 취지를 송신하고, 휴대 재생 장치는 근거리 통신부에 의해 권리 부존재의 취지를 권리 인증 수단으로부터 받아서, 권리 취득 제안 처리를 개시하는 취득 처리 개시 수단을 더 구비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고 있다.
- <40> 따라서, 콘텐츠는 존재하지만 재생할 권리가 없는 경우에는 그 취득을 재촉할 수 있다.
- <41> (21)본 발명에 따른 콘텐츠 제공 시스템은 권리 인증 수단은 이하의 A) 또는 B)에 의해 재생의 허가·불허가를 행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시스템, 장치 또는 프로그램. A)재생 지시의 대상인 재생 장치용 콘텐츠에 대응하는 권리 데이터가 있다고 판단된 경우에는 재생 수단에 재생 허가 신호를 부여함으로써 재생을 허가하고, 상기 권리 데이터가 없다고 판단된 경우에는 재생 불허가 신호를 부여하거나, 재생 허가 신호를 부여하지 않음으로써 재생을 허가하지 않는다. B)재생 지시의 대상인 재생 장치용 콘텐츠에 대응하는 권리 데이터가 있다고 판단된 경우에는 재생 수단에 재생 허가 신호를 부여하거나, 재생 불허가 신호를 부여하지 않음으로써 재생을 허가하고, 상기 권리 데이터가 없다고 판단된 경우에는 재생 불허가 신호를 부여함으로써 재생을 허가하지 않는다.
- <42> (22)본 발명에 따른 콘텐츠 제공 시스템은 권리 데이터는 암호화된 재생 장치용 콘텐츠를 복호화하기 위한 키이며, 권리 인증 수단은 재생 지시의 대상인 재생 장치용 콘텐츠의 키가 존재하면, 당해 키를 재생 수단에 부여함으로써 복호화된 재생 장치용 콘텐츠의 재생을 허가하고, 재생 지시의 대상인 재생 장치용 콘텐츠의 키가 존재하지 않으면, 당해 키를 재생 수단에 부여하지 않음으로써 복호화된 재생 장치용 콘텐츠의 재생을 허가하지 않는 것을 특징으로 하고 있다.
- <43> 따라서, 재생할 권리가 없는 경우에는 복호화 키를 부여하지 않음으로써, 실질적으로 콘텐츠의 재생을 허가하지 않도록 할 수 있다.
- <44> (23)본 발명에 따른 콘텐츠 제공 시스템은 권리 증명 장치는 비접촉식 IC 카드, 휴대 전화, PDA 중의 어느 하나인 것을 특징으로 하고 있다.
- <45> (24)본 발명에 따른 콘텐츠 제공 시스템은 재생 장치는 비디오 재생 장치, 하드 디스크 레코더, DVD 재생 장치, 텔레비전 수신 장치, 스테레오 장치, 휴대형 음악 재생 장치, 퍼스널 컴퓨터, 카 내비게이션, 가정용 게임기 중의 어느 하나인 것을 특징으로 하고 있다.
- <46> (25)본 발명에 따른 콘텐츠 제공 시스템은 재생 장치는 재생 장치 본체와 근거리 통신 장치를 구비하고 있으며, 상기 재생 장치 본체는 재생 장치용 콘텐츠를 기록하기 위한 콘텐츠 기록부에 액세스하는 수단과, 권리 인증 수단에 의해 권리 데이터의 존재가 확인된 재생 장치용 콘텐츠를 재생하는 재생 수단을 구비하며, 상기 근거리 통신 장치는 권리 증명 장치와 근거리 통신을 행하기 위한 근거리 통신부를 구비한 것을 특징으로 하고 있다.
- <47> 따라서, 재생 장치 본체가 통신 기능을 갖지 않는 경우이더라도, 본 발명을 적용할 수 있다.

- <48> (26)본 발명에 따른 콘텐츠 제공 시스템은 재생 장치 본체는 근거리 통신부에 의해 권리 증명 장치와 통신하고, 광역 통신 가능한 권리 증명 장치를 통하여, 서버 장치로부터 재생 장치용 콘텐츠를 취득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고 있다.
- <49> (27)본 발명에 따른 콘텐츠 제공 시스템은 재생 장치는 근거리 통신 장치와, 각각이 당해 근거리 통신 장치에 통신 가능하게 접속된 복수개의 재생 기기를 구비하여 구성되고, 상기 근거리 통신 장치에 근거리 통신부 및 권리 인증 수단이 설치되어 있는 것을 특징으로 하고 있다.
- <50> 따라서, 근거리 통신 장치에 의해, 복수개의 재생 기기의 권리 인증을 행할 수 있다.
- <51> (28)본 발명에 따른 콘텐츠 제공 시스템은 권리 증명 장치 및 재생 장치의 상기 근거리 통신부는 무선 또는 유선 통신을 행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고 있다.
- <52> (29)본 발명에 따른 콘텐츠 제공 시스템은 재생 장치는 재생 장치용 콘텐츠 재생의 중단 지령을 받으면 콘텐츠의 중단 위치를 권리 증명 장치에 송신하는 수단을 구비하고, 권리 증명 장치는 수신된 중단 위치를 기록부에 기록하는 수단을 구비하고 있으며, 권리 증명 장치는 재생 장치용 콘텐츠의 재생 지령을 재생 장치에 송신할 때에, 당해 재생 장치용 콘텐츠에 대응하여 기록되어 있는 중단 위치를 아울러 송신하고, 재생 장치는 재생 지령과 함께 보내져 오는 중단 위치로부터 당해 재생 장치용 콘텐츠의 재생을 개시하는 수단을 구비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고 있다.
- <53> 따라서, 도중에 재생을 중단한 콘텐츠를, 다른 재생 장치에서도, 그 후속부터 재생할 수 있다.
- <54> 본 발명에 있어서, "휴대 재생 장치"란 가반성이 있는 콘텐츠 재생 가능한 장치를 말하며, 휴대 전화 장치, 휴대 텔레비전, 휴대 음악 플레이어, PDA 등을 포함하는 개념이다.
- <55> "재생 장치"란 콘텐츠 재생 가능한 장치를 말하며, 비디오 재생 장치, 하드 디스크 레코더, DVD 재생 장치, 텔레비전 수신 장치, 스테레오 장치, 휴대형 음악 재생 장치, 퍼스널 컴퓨터, 가정용 게임기를 포함하는 개념이다. 또한, 근거리 통신 장치와 재생 기기의 조합도, 재생 장치에 포함되는 개념이다.
- <56> "콘텐츠"란 화상, 음악, 음성, 전자 북 등의 전자 데이터를 말한다.
- <57> "광역 통신"이란 인터넷, 공중 회선망, 광역 무선 통신 등을 말한다.
- <58> "근거리 통신"이란 적외선 통신, 전자 결합 통신, 블루투스(상표) 등, 동일 건물 내 정도의 근거리에서 통신 가능한 무선 통신이나 유선 통신 등을 말한다. 도 25의 인터페이스(502)에 의해, 가반성 기록 매체(500)와 권리 인증 수단(68)이 행하는 통신도, 근거리 통신의 개념에 포함한다.
- <59> "통신부"란 상기의 광역 통신이나 근거리 통신 등의 통신을 행하는 것을 말한다.
- <60> "권리 상황을 나타낸 데이터"란 권리 데이터 그 자체뿐만 아니라, 권리 데이터에 의거하여 생성된 데이터도 포함하는 개념이다.
- <61> "권리 증명 장치"란 권리 데이터 또는 권리의 유무를 나타낸 데이터를 기록하는 장치를 말한다. 제2 실시형태에 있어서의 권리 증명 장치(7)나 액세스 포인트(200) 뿐만 아니라, 제1 실시형태에 있어서의 휴대 재생 장치(6)도 포함하는 개념이다.
- <62> "요구 수단"은 실시형태에서는 스텝 S12에 대응한다.
- <63> "취득 수단"은 실시형태에서는 스텝 S13이 대응한다.
- <64> "권리 상황 송신 수단"은 실시형태에서는 스텝 S18이 대응한다.
- <65> "재생 수단"은 실시형태에서는 스텝 S37이 대응한다.
- <66> "재생 지시 취득 수단"은 재생 장치에 설치된 재생 버튼 등으로부터의 재생 지시를 수취하는 것뿐만 아니라, 권리 증명 장치로부터 송신되어 온 재생 지시를 수취하는 것도 포함하는 개념이다.
- <67> "권리 인증 수단"은 실시형태에서는 스텝 S32가 대응한다. 또한, 권리 인증 수단에 의한 재생의 허가는 재생 수단에 대하여 허가 신호를 전달하고 이에 따라서 재생 수단이 재생을 개시하는 경우뿐만 아니라, 재생 수단에 대하여 암호화된 재생 장치용 콘텐츠의 복호화 키를 부여함으로써 재생을 허가하는 경우도 포함한다.
- <68> "프로그램"이란 CPU에 의해 직접 실행 가능한 프로그램뿐만 아니라, 소스 형식의 프로그램, 압축 처리가 이루어

진 프로그램, 암호화된 프로그램 등을 포함하는 개념이다.

실시예

<112> I. 제1 실시형태

<113> 1. 시스템의 전체 구성

<114> 도 1에, 본 발명의 일실시형태에 따른 콘텐츠 제공 시스템의 구성을 도시한다. 이 시스템은 서버 장치(2), 휴대 재생 장치(4), 재생 장치(6)를 구비하고 있다. 서버 장치(2)와 휴대 재생 장치(4)는 광역 통신부(24, 40)를 구비하고 있으며, 인터넷 등의 광역 통신망을 통하여 통신을 행한다. 재생 장치(6)에도, 광역 통신부(60)가 설치되어 있으며, 서버 장치(2)와의 사이에서, 인터넷 등의 광역 통신망을 통하여 통신을 행한다.

<115> 휴대 재생 장치(4)의 요구 수단(42)은 콘텐츠의 구입 요구를 광역 통신부(40)를 통하여 권리 발행 장치인 서버 장치(2)에 송신한다. 이것을 받은 서버 장치(2)의 대(對) 휴대 송출 수단(20)은 휴대용 콘텐츠 및 권리 데이터를 휴대 재생 장치(4)에 송신한다. 휴대 재생 장치(4)의 취득 수단(44)은 광역 통신부(40)를 통하여 이 휴대용 콘텐츠 권리 데이터를 수신하고, 각각 콘텐츠 기록부(52), 권리 기록부(50)에 기록한다.

<116> 휴대 재생 장치(4)는 재생 수단(54)에 의해, 콘텐츠 기록부(52)에 기록되어 있는 휴대용 콘텐츠를 재생한다. 이에 따라, 사용자는 구입한 콘텐츠를 휴대 재생 장치에서 열람할 수 있다.

<117> 한편, 재생 장치(6)에 대하여, 서버 장치(2)의 대(對) 재생 장치 송출 수단(22)은 재생 장치용 콘텐츠를 송신한다. 재생 장치(6)의 취득 수단(62)은 광역 통신부(60)를 통하여 이것을 수신하고, 콘텐츠 기록부(64)에 기록한다.

<118> 휴대 재생 장치(4)와 재생 장치(6)가 근거리 통신부(56, 72)에 의해 통신을 확립하면, 휴대 재생 장치(4)의 권리 상황 송신 수단(48)은 권리 기록부(50)에 기록되어 있는 권리 데이터에 의거한 권리 상황 데이터를 재생 장치(6)에 송신한다.

<119> 재생 장치(6)의 재생 지시 취득 수단(66)은 재생 장치용 콘텐츠에 대한 사용자로부터의 재생 지시를 수취한다. 권리 인증 수단(68)은 휴대 재생 장치(4)로부터 송신되어 온 권리 상황 데이터에 의거하여, 재생 지시가 이루어진 콘텐츠의 권리가 있는지의 여부를 판단한다. 권리가 있다고 판단하면, 재생 수단(70)에 의해, 콘텐츠 기록부(64)에 기록되어 있는 재생 장치용 콘텐츠를 재생한다. 권리가 없다고 판단하면, 재생을 허가하지 않는다.

<120> 상기와 같이 하여, 휴대 재생 장치(4)에 있어서는 구입한 콘텐츠의 휴대판을 재생할 수 있으며, 재생 장치(6)에 있어서는 권리를 갖는 휴대 재생 장치(4)가 근거리 통신이 가능한 범위 내에 있다는 것을 조건으로 재생 장치용 콘텐츠를 재생할 수 있다.

<121> 상기 실시형태에서는, 유상으로 권리 데이터를 구입하도록 하고 있으나, 유상·무상에 관계없이, 권리 데이터를 취득하도록 할 수 있다. 이하, 권리 데이터를 구입하는 경우에 대하여 설명하지만, 유상·무상에 관계없이, 권리 데이터를 취득하는 경우 일반에 적용할 수 있다.

<122> 2. 하드웨어 구성

<123> 2.1 휴대 재생 장치의 하드웨어 구성

<124> 도 2에, 휴대 재생 장치인 휴대 전화(4)의 하드웨어 구성을 도시한다. CPU(41)에는 디스플레이(47), 스피커(49), 광역 통신 회로(40), 근거리 통신 회로(56), 메모리(43), 조작부(45)가 접속되어 있다. 또한, 통화를 위한 회로 등은 생략되어 있다.

<125> 디스플레이(47)는 휴대용 콘텐츠를 표시하거나, 조작 화면을 표시하는 것이다. 스피커(49)는 휴대용 콘텐츠를 음으로서 출력하거나, 조작음을 출력하는 것이다.

<126> 메모리(43)는 예를 들면 불휘발성의 리라이트 가능한 기억 회로(P-PROM 등)에 의해 구성되어 있다. 메모리(43)에는 오퍼레이팅 시스템(IRON(상표) 등)(51), 제어 프로그램(53)이 기록되어 있다. 제어 프로그램(53)은 OS(51)와 협동하여 그 기능을 발휘한다. OS(51)를 준비하지 않고, 제어 프로그램(53) 단독으로, 그 기능을 실현하도록 해도 무방하다.

<127> 조작부(45)는 콘텐츠의 권리 구입(권리 취득), 콘텐츠의 선택, 재생 지시 등의 조작을 행하기 위한 커서 키, 숫자·문자 키 등이다.

- <128> 2.2 재생 장치의 하드웨어 구성
- <129> 도 3에, 재생 장치(6)의 하드웨어 구성을 도시한다. CPU(61)에는 디스플레이(69), 스피커(71), 광역 통신 회로(60), 근거리 통신 회로(72), 하드 디스크(63), 조작부(65), 메모리(67)가 접속되어 있다.
- <130> 디스플레이(69)는 재생 장치용 콘텐츠를 표시하거나, 조작 화면을 표시하는 것이다. 스피커(71)는 재생 장치용 콘텐츠를 음으로 출력하거나, 조작음을 출력하는 것이다.
- <131> 하드 디스크(63)에는 오퍼레이팅 시스템(WINDOWS(상표) 등)(73), 제어 프로그램(75)이 기록되어 있다. 제어 프로그램(75)은 OS(73)와 협동하여 그 기능을 발휘한다. OS(73)를 준비하지 않고, 제어 프로그램(75) 단독으로, 그 기능을 실현하도록 해도 무방하다.
- <132> 조작부(65)는 콘텐츠의 선택, 재생 지시 등의 조작을 행하기 위한 커서 키, 숫자·문자 키 등이다.
- <133> 메모리(67)는 휘발성 메모리 등으로 구성되며, CPU(61)의 워크 에리어, 권리 상황 데이터의 일시적인 기억 등에 이용된다.
- <134> 2.3 서버 장치의 하드웨어 구성
- <135> 도 4에, 서버 장치(2)의 하드웨어 구성을 도시한다. CPU(21)에는 하드 디스크(23), 광역 통신 회로(24)가 접속되어 있다.
- <136> 하드 디스크(23)에는 오퍼레이팅 시스템(WINDOWS(상표) 등)(25), 제어 프로그램(27)이 기록되어 있다. 제어 프로그램(27)은 OS(25)와 협동하여 그 기능을 발휘한다. OS(25)를 준비하지 않고, 제어 프로그램(27) 단독으로, 그 기능을 실현하도록 해도 무방하다.
- <137> 또한, 하드 디스크(23)에는 휴대용 콘텐츠(29), 재생 장치용 콘텐츠(31), 권리 관리 데이터(33)가 기록되어 있다. 권리 관리 데이터(33)는 각 사용자마다, 구입한 콘텐츠의 권리 상황을 도시한 데이터이다.
- <138> 3. 콘텐츠 제공 처리
- <139> 도 5a~도 5d에, 서버 장치(2)의 하드 디스크(23)에 기록된 제어 프로그램(27), 휴대 재생 장치(4)의 메모리(43)에 기록된 제어 프로그램(53), 재생 장치(6)의 하드 디스크(63)에 기록된 제어 프로그램(75)의 플로 차트를 도시한다.
- <140> 서버 장치(2)의 하드 디스크(23)에는 복수개의 콘텐츠가 기록되어 있다. 각 콘텐츠는 휴대용 콘텐츠(29)와 재생 장치용 콘텐츠(31)의 그룹에 의해 구성되어 있다. 그룹으로 되어 있는 휴대용 콘텐츠(29)와 재생 장치용 콘텐츠는 동일한 내용의 콘텐츠이지만, 전자가 휴대 재생 장치용의 저정밀도(화면 사이즈가 작고, 화소가 거친 등)의 콘텐츠인데 비하여, 후자가 재생 장치용의 고정밀도(화면 사이즈가 크고, 화소가 조밀한 등)의 콘텐츠인 점에서 상이하다. 하드 디스크(23)에는, 도 6에 도시한 바와 같이, 콘텐츠 식별자, 휴대용 콘텐츠의 파일명, 재생 장치용 콘텐츠의 파일명을 기술한 콘텐츠 테이블이 기록되어 있다. 또한, 도면에서는 생략하고 있지만, 콘텐츠 테이블에는 콘텐츠의 타이틀, 구입 가격 등이 기술되어 있다.
- <141> 또한, 이하의 처리에 있어서, 서버 장치(2), 휴대 재생 장치(4), 재생 장치(6) 사이의 통신은 암호화하여 행해진다. 또한, 이하의 처리 설명에 있어서, 사용자의 조작이라는 취지를 명시한 것 이외에 대해서는, 서버 장치(4)의 CPU(21), 휴대 재생 장치(4)의 CPU(41), 재생 장치(6)의 CPU(61)가 제어 프로그램에 따라 행하는 처리이다.
- <142> 사용자가 콘텐츠의 구입을 행할 때에는, 휴대 재생 장치(4)의 조작부(45)를 조작하고, 사용자 ID, 패스워드 등을 입력하여 서버 장치(2)에 액세스한다(스텝 S11). 휴대 재생 장치(4)는 각자의 어드레스를 붙여서, 액세스 요구를 서버 장치(2)에 송신한다. 이것을 받아서, 서버 장치(2)는 도 6의 콘텐츠 테이블을 참조하여, 도 7에 도시한 바와 같은 구입 화면을 생성하여 휴대 재생 장치(4)에 송신한다(스텝 S1). 이 때, 서버 장치(2)는 각 콘텐츠의 콘텐츠 식별자도 송신한다.
- <143> 휴대 재생 장치(4)는 이것을 디스플레이(47)에 표시한다. 사용자는 조작부(45)를 조작하여, 구입을 희망하는 콘텐츠를 선택하고, 구입 버튼을 클릭한다. 이에 따라, 서버 장치(2)에 대하여, 선택된 콘텐츠의 구입 요구가 송신된다(스텝 S12). 이 구입 요구에는, 선택된 콘텐츠의 콘텐츠 식별자도 포함하여 송신된다.
- <144> 서버 장치(2)에서는, 콘텐츠 식별자를 포함하는 구입 요구를 받아서, 결제 처리를 행한다. 예를 들면, 사용자 ID에 대응하여 미리 등록되어 있는 은행이나 크레딧의 관리 서버와 통신하여, 콘텐츠 식별자에 대응하는 구입

가격을 결제한다.

- <145> 서버 장치(2)의 하드 디스크(23)에는 각 사용자마다 권리 폴더가 형성되고, 당해 폴더 중에, 모든 콘텐츠의 권리 데이터가 기록되어 있다. 서버 장치(2)는 당해 사용자의 권리 폴더에 기록되어 있는 구입된 콘텐츠의 권리 데이터에 의거하여, 그 플래그를 "미구입 상태"로부터 "구입 상태"로 한다(스텝 S2).
- <146> 권리 데이터의 데이터 구조를 도 8에 도시한다. 권리 스테이터스의 구입/미구입 플래그를 "구입"으로 함으로써, 권리가 있는 상태로 된다. 권리 스테이터스에 있어서는, 권리 입수일, 유효 기한 등이 기술된다.
- <147> 서버 장치(2)는 당해 사용자의 권리 폴더 중의 모든 권리 데이터를 휴대 재생 장치(4)에 송신한다(스텝 S52). 휴대 재생 장치(4)는 메모리(43)에 수신한 권리 데이터를 기록한다(스텝 S13). 이 권리 데이터는 휴대 재생 장치(4)의 전원을 오프로 하더라도 보존된다. 또한, 서버 장치(2)는 모든 권리 데이터를 송신하지 않고, 구입된 콘텐츠의 권리 데이터만을 송신하도록 해도 무방하다.
- <148> 계속하여, 휴대 재생 장치(4)는 구입한 콘텐츠의 콘텐츠 식별자를 서버 장치(2)에 송신하고, 휴대용 콘텐츠의 다운 로드를 요구한다(스텝 S14). 이것을 받아서, 서버 장치(2)는 휴대용 콘텐츠를 휴대 재생 장치(4)에 송신한다(스텝 S3). 또한, 휴대 재생 장치(4)에 있어서 이미, 휴대용 콘텐츠가 기록되어 있는 경우에는, 휴대 재생 장치(4)는 이 다운 로드 요구를 행하지 않도록 해도 무방하다.
- <149> 휴대 재생 장치(4)는 수신한 휴대용 콘텐츠를 메모리(43)에 기록한다(스텝 S15). 사용자는 조작부(45)를 조작함으로써, 휴대용 콘텐츠를 재생할 수 있다(스텝 S16). 이 때, 휴대 재생 장치(4)는 사용자로부터의 콘텐츠의 재생 지시를 받아서, 당해 콘텐츠의 권리가 있는 경우에만 재생을 허가한다.
- <150> 다음으로, 구입한 콘텐츠를 재생 장치(6)에서 재생하는 경우의 처리에 관하여 설명한다. 먼저, 사용자는 휴대 재생 장치(4)를 가지고 재생 장치(6)의 근방(근거리 통신이 가능한 정도)에 가까이 가고, 조작부(45)를 조작하여 재생 장치(6)와의 통신을 개시한다(스텝 S17). 이 통신 개시는 구체적으로는 도 9의 화면에 도시한 바와 같이, 리모콘 모드를 선택함으로써 행해진다.
- <151> 또한, 휴대 재생 장치(4)의 부근에 재생 장치(6)가 없는 경우에는, 근거리 통신이 불가능하여 통신은 확립되지 않는다.
- <152> 통신이 확립되면, 휴대 재생 장치(4)는 메모리(43)에 기록되어 있는 모든 권리 데이터를 재생 장치(6)에 송신한다(스텝 S18). 재생 장치(6)는 이것을 수신하여 메모리(67)에 기억한다(스텝 S31).
- <153> 휴대 재생 장치(4)는 기록되어 있는 권리 데이터에 의거하여, 콘텐츠의 일람을 디스플레이(47)에 표시한다(스텝 S19). 이때, 휴대 재생 장치(4)는 권리가 있는 콘텐츠(플래그가 "구입"으로 되어 있는 것)와, 권리가 없는 콘텐츠(플래그가 "미구입"으로 되어 있는 것)을 구별하여 표시한다. 예를 들면, 도 10에 도시한 바와 같이, 권리가 있는 콘텐츠에 대해서는, 이것을 구별하는 표시(90)를 붙여서 표시한다.
- <154> 사용자는 조작부(45)를 조작하여 화면에 표시된 콘텐츠를 선택한다. 이에 따라, 휴대 재생 장치(4)는 선택된 콘텐츠의 콘텐츠 식별자를 명시한 재생 지시를, 재생 장치(6)에 송신한다(스텝 S20).
- <155> 재생 장치(6)는 메모리(43)에 기록되어 있는 권리 데이터를 참조하고, 재생 지시가 이루어진 콘텐츠의 권리가 있는지의 여부, 즉 당해 콘텐츠의 권리 데이터의 플래그가 "구입"으로 되어 있는지의 여부를 판단한다(스텝 S32). 권리가 없다고 판단된 경우에는, 권리 구입(취득) 제안 처리(스텝 S33)를 실행한다.
- <156> 재생 장치(6)는 권리가 있다고 판단된 경우에는, 재생 지시가 이루어진 콘텐츠의 재생 장치용 콘텐츠가, 하드 디스크(63)에 기록되어 있는지의 여부를 판단한다(스텝 S34). 이미, 재생 장치용 콘텐츠가 재생 장치(6)에 기록되어 있으면, 재생 장치용 콘텐츠의 재생을 행한다(스텝 S37). 또한, 재생 장치용 콘텐츠의 재생은 재생을 위한 프로그램이나 회로에 의해 실행된다.
- <157> 또한, 재생 장치용 콘텐츠가 기록되어 있지 않는 경우에는, 서버 장치(4)에 대하여 당해 콘텐츠의 다운 로드 요구를 행하고(스텝 S35), 다운 로드하여 하드 디스크(63)에 기록한다(스텝 S4, S36). 그 후, 재생 장치용 콘텐츠의 재생을 행한다(스텝 S37).
- <158> 재생이 종료되면, 재생 장치(6)는 휴대 재생 장치(4)와의 통신이 종료되었는지의 여부를 판단한다(스텝 S38). 통신의 종료는 예를 들면 휴대 재생 장치(4)로부터 통신 종료의 취지를 수신한 것, 재생 장치(6)로부터 근거리 통신에 의해 휴대 재생 장치(4)를 호출하더라도 응답이 없는 경우(휴대 재생 장치(4)가 재생 장치(6)로부터 떨어진, 리모콘 모드를 해제한 등의 경우) 등에 의해 판단할 수 있다.

- <159> 통신 종료로 판단하면, 재생 장치(6)는 메모리(67)에 일시적으로 기억되어 있는 권리 데이터를 소거한다(스텝 S39).
- <160> 이와 같이, 재생 장치(6)의 근방에 권리를 갖는 휴대 재생 장치(4)가 없으면, 콘텐츠를 재생할 수 없도록 되어 있다. 따라서, 부정하게 콘텐츠가 복제되었다고 하더라도, 권리를 갖는 자가 아니면 재생이 불가능하다.
- <161> 또한, 콘텐츠에 대하여 권리를 기록한 휴대 재생 장치(4)를 갖고 있으면, 타인이 당해 콘텐츠를 다운 로드한 재생 장치(6)에 있어서도, 근거리 통신에 의해 권리를 인증하여 재생을 행할 수 있다. 즉 권리를 기록한 휴대 재생 장치(4)를 갖는 자라면, 타인이 다운 로드한 타인의 재생 장치(6)에 있어서도, 재생 장치용 콘텐츠를 재생할 수 있다.
- <162> 다음으로, 스텝 S32에 있어서, 재생 지시가 이루어진 콘텐츠의 권리를 갖고 있지 않는 경우에 행해지는 "권리 구입 제안 처리"에 대하여 설명한다. 도 5d에, 권리 구입 제안 처리의 플로 차트를 도시한다.
- <163> 재생 장치(6)는 권리 데이터를 참조하며, 재생 지시가 이루어진 콘텐츠의 권리가 없다고 판단되면, 당해 콘텐츠의 콘텐츠 식별자를 포함하는 구입 안내 요구를 휴대 재생 장치(4)에 송신한다(스텝 S71). 이것을 받은 휴대 재생 장치(4)는 서버 장치(2)에 전송한다(스텝 S61). 서버 장치(2)는 구입 안내 요구를 받아서, 콘텐츠 식별자에 의해 콘텐츠를 특정하고, 당해 콘텐츠의 구입 안내 화면을 생성하여 송신한다(스텝 S51).
- <164> 휴대 재생 장치(4)는 수신한 구입 안내 화면을 디스플레이(47)에 표시한다(스텝 S62). 화면예를 도 11에 도시한다. 휴대 재생 장치(4)는 구입 안내 화면을 재생 장치(6)에 전송한다. 따라서, 재생 장치(6)에 있어서도, 구입 안내 화면이 표시된다(스텝 S72).
- <165> 사용자가, 조작부(45)를 조작하여 구입 버튼을 클릭하면, 휴대 재생 장치(4)는 콘텐츠 식별자를 포함하는 구입 요구를 서버 장치(2)에 송신한다(스텝 S63). 이에 따라, 스텝 S2, S13, S14, S3, S15에서 설명한 처리와 유사한 권리의 구입 처리가 행해진다(스텝 S52, S64, S65, S53, S66).
- <166> 이와 같이, 권리의 구입이 행해지고, 재생 지시가 이루어진 콘텐츠의 재생이 행해진다(스텝 S34 이하).
- <167> 4. 기타 실시형태
- <168> 4.1 콘텐츠의 다운 로드에 대하여
- <169> 상기 실시형태에서는 권리 구입 시에 자동적으로 휴대용 콘텐츠를 서버 장치(2)로부터 다운 로드하도록 하고 있지만, 사용자의 조작에 의해 휴대용 콘텐츠를 다운 로드하도록 해도 무방하다.
- <170> 또한, 권리 구입 시에, 자동적으로 재생 장치(6)에 대하여 재생 장치용 콘텐츠를 다운 로드하도록 해도 무방하다. 이 경우, 도 12A에 도시한 바와 같이 처리를 할 수 있다. 또한, 휴대 재생 장치(4)와 재생 장치(6) 사이는 근거리 통신, 휴대 재생 장치(4)와 서버 장치(2) 사이, 재생 장치(6)와 서버 장치(2) 사이는 광역 통신으로 행한다.
- <171> 휴대 재생 장치(4)가 서버 장치(2)에 구입 요구를 송신한다. 이와 함께, 휴대 재생 장치(4)는 당해 구입 요구(적어도, 구입 요구를 행한 콘텐츠 식별자가 포함되어 있어도 무방하다)를 재생 장치(6)에도 송신한다. 재생 장치(6)는 각자의 어드레스를 붙여서, 이 구입 요구를 서버 장치(2)에 전송한다. 서버 장치(2)는 휴대 재생 장치(4) 및 재생 장치(6)로부터의 구입 요구(또는 어느 한쪽으로부터의 구입 요구)를 받아서, 결제 처리를 행한다. 계속하여, 서버 장치(2)는 휴대 재생 장치(4)에 휴대용 콘텐츠를 다운 로드하고, 재생 장치(6)에 재생 장치용 콘텐츠를 다운 로드한다.
- <172> 또한, 도 12B에 도시한 바와 같은 처리를 행해도 무방하다. 사용자는 휴대 재생 장치(4)를 조작하여 구입 요구를 서버 장치(2)에 송신할 때에, 재생 장치용 콘텐츠를 다운 로드해야 할 재생 장치(6)의 어드레스를 지정한다. 또한, 재생 장치(6)의 어드레스는 미리 휴대 재생 장치(4)에 기억해 두어도 무방하지만, 휴대 재생 장치(4)가 근거리 통신에 의해 찾아내도록 해도 무방하다.
- <173> 즉 휴대 재생 장치(4)는 구입 요구를 송신할 때에 근거리 통신에 의해 재생 장치가 존재하지 않는지의 여부를 문의하는 질문을 송신한다. 근거리 통신이 가능한 범위 내에 재생 장치(6)가 존재하지 않으면, 재생 장치(6)로부터의 응답을 받을 수 없다. 재생 장치(6)로부터의 응답이 없으면, 휴대 재생 장치(4)는 구입 요구만을 서버 장치(2)에 송신한다.
- <174> 한편, 근거리 통신이 가능한 범위 내에 재생 장치(6)가 존재하면, 재생 장치(6)로부터의 응답을 받을 수 있다.

재생 장치(6)로부터의 응답이 있으면, 휴대 재생 장치(4)는 재생 장치(6)로부터 그 어드레스를 취득하고, 당해 어드레스를 붙여서 구입 요구를 서버 장치(2)에 송신한다.

- <175> 이것을 받은 서버 장치(2)는 휴대 재생 장치(4)에 휴대용 콘텐츠를 다운 로드하고, 재생 장치(6)에 재생 장치용 콘텐츠를 다운 로드한다.
- <176> 또한, 상기 실시형태에서는, 재생 장치(6)로의 재생 장치용 콘텐츠의 다운 로드나 휴대 재생 장치(4)로의 휴대용 콘텐츠의 다운 로드를, 구입 요구에 관련지어서 자동적으로 행하는 경우에 대하여 설명하였다. 그러나, 콘텐츠 구입의 전후를 불문하고, 사용자에게 의해 휴대 재생 장치(4)나 재생 장치(6)를 조작함으로써, 임의로 다운 로드를 행하도록 해도 무방하다. 이 실시형태에서는, 휴대 재생 장치(4)에 권리를 기록하지 않으면 콘텐츠를 재생할 수 없으므로, 권리 구입 전에 콘텐츠만을 다운 로드해도 문제는 생기지 않는다. 또한, 권리가 없는 상태(휴대 재생 장치에 권리를 구입하지 않거나, 또는 재생 장치의 근방에 권리를 기록한 휴대 재생 장치가 없는 상태)에서 콘텐츠를 재생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완전히 재생을 금지하거나, 또는 일부만의 재생(프리뷰)을 허가하도록 한다.
- <177> 상기 실시형태에서는, 재생 장치(6)는 재생 장치용 콘텐츠를 서버 장치(2)로부터 다운 로드함으로써 얻고 있다. 그러나, 재생 장치(6)는 CD-ROM 등의 가반성 기록 매체에 의해 재생 장치용 콘텐츠를 취득하도록 해도 무방하다.
- <178> 또한, 상기 실시형태에서는, 재생 장치(6)에 기록된 재생 장치용 콘텐츠를 재생하도록 해도 무방하다. 그러나, 스트리밍에 의해 서버 장치(2)로부터 송신한 재생 장치용 콘텐츠를 재생하도록 해도 무방하다.
- <179> 상기 실시형태에서는, 콘텐츠가 화상 데이터인 경우에 대하여 설명하였으나, 음성 데이터나 문자 데이터 등이어도 무방하다.
- <180> 4.2 권리 데이터의 송신에 대하여
- <181> 상기 실시형태에서는 모든 콘텐츠의 권리 데이터를 서버 장치(2)로부터 휴대 재생 장치(4)에 송신하고 있다. 그러나, 구입이 끝난 콘텐츠의 권리 데이터만을 송신하도록 해도 무방하다. 또한, 휴대 재생 장치(4)로부터 재생 장치(6)에 송신하는 권리 데이터도, 구입이 끝난 콘텐츠의 권리만으로 해도 무방하다. 이 경우에는, 도 10의 디스플레이 화면에는 구입이 끝난 콘텐츠만이 표시되게 된다.
- <182> 또한, 휴대 재생 장치(4)에 있어서 잘못하여 권리 데이터를 소거한 경우나, 휴대 재생 장치(4)를 분실한 경우에는, 서버 장치(2)에 액세스하여 사용자 인증을 행함으로써, 제차 권리 데이터를 다운 로드할 수 있도록 해도 무방하다.
- <183> 4.3 재생 장치용 콘텐츠의 재생 지시에 대하여
- <184> 상기 실시형태에서는, 휴대 재생 장치(4)로부터 재생 장치(6)에 대하여 재생 장치용 콘텐츠의 재생 지시를 송신하고 있다. 그러나, 재생 장치(6)의 조작부로부터 재생 지시를 부여하도록 해도 무방하다. 또한, 재생 장치(6)를 위한 리모콘 장치로부터 재생 지시를 부여하도록 해도 무방하다.
- <185> 상기 실시형태에서는, 권리 데이터 그 자체를 휴대 재생 장치(4)로부터 재생 장치(6)에 송신하고 있다. 그러나, 권리 데이터 그 자체뿐만 아니라 권리 데이터에 의거하여 생성된 권리의 유무를 나타낸 데이터를 송신하도록 해도 무방하다.
- <186> 상기 실시형태에서는, 권리 데이터에 의거하여 당해 콘텐츠에 대한 권리가 있다는 것을 확인하면 재생을 허가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재생 장치용 콘텐츠를 암호화해 두고, 권리가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만 재생 프로그램(재생 회로)에 복호화 키를 부여하도록 하여, 재생을 허가하도록 해도 무방하다.
- <187> 4.4 휴대 재생 장치
- <188> 상기 실시형태에서는, 휴대 재생 장치(4)를 이용하여 휴대용 콘텐츠를 휴대 재생 장치(4)에 의해 재생 가능하게 하고 있다. 그러나, 서버 장치(2)로부터는 휴대용 콘텐츠를 휴대 재생 장치에 다운 로드하지 않도록 해도 무방하다. 이 경우에는, 휴대 재생 장치(4)는 권리 증명 장치로서의 의미를 갖게 된다.
- <189> 4.5 재생 허가 판단에 대하여
- <190> 상기 실시형태에서는, 재생 장치 또는 휴대 재생 장치는 재생 지령이 나온 콘텐츠에 대하여 권리를 갖고 있는지의 여부를 판단하고, 권리를 갖고 있으면 재생을 허가하도록 하고 있다. 즉 권리 데이터에는 당해 콘텐츠에 대

한 권리를 갖고 있는지의 여부를 기록하도록 하고 있다.

- <191> 그러나, 권리 데이터 중에, 재생이 가능한 재생 장치(텔레비전, 카 내비게이션 장치, 휴대 장치 등), 재생이 가능한 기간 등을 조건으로 하여 기술해 두고, 당해 조건에 따라 재생 가능한지의 여부를 판단하도록 해도 무방하다.
- <192> 또한, 콘텐츠의 정밀도(비트 레이트 등), 암호화되어 있는지의 여부, 사용자가 특정 모임의 회원인지의 여부에 따라서, 무조건 재생을 허가하거나, 권리를 구입하고 있지 않으면 재생을 허가하지 않거나, 그 판단 처리를 바꾸도록 해도 무방하다.
- <193> 4.5 권리 데이터의 가반성
- <194> 상기 실시형태에서는, 권리 증명 장치인 휴대 재생 장치(4)의 내부에 권리 기록부를 설치하고 있다. 이와 같이 함으로써, 당해 휴대 재생 장치(4)를 갖고 있는 본인만이 콘텐츠를 재생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휴대 재생 장치(4)를 타인에게 빌려 주는 것은 일상적이지 않으므로, 이에 따라, 콘텐츠의 부정할 수 있다. 그러나, 그 반면, 휴대 전화(4)의 기록 용량을 넘은 권리를 구입할 수 없다는 문제가 있다.
- <195> 도 13에 도시한 실시형태에서는, 상기의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SD 카드(상표) 등의 가반성 기록 매체(550)에, 권리 데이터를 기록하도록 하고 있다. 이에 따라, 가반성 기록 매체(550)를 바꿈으로써, 더욱 많은 권리 데이터를 축적할 수 있게 된다.
- <196> 도 13에 있어서, 인터페이스(55)는 가반성 기록 매체(550)를 CPU(41)에 접속하기 위한 것이다. 또한, 가반성 기록 매체(550)에 권리 데이터를 그대로 기입하도록 해도 무방하지만, 그 경우에는, 가반성 기록 매체(550)만 갖고 있으면 다른 휴대 전화에서도 사용할 수 있으며, 부정할 사용이 이루어질 가능성이 있다. 그러므로, 권리 데이터를 휴대 재생 장치(4)의 개체 식별 번호에 의해 암호화하여 기록하도록 하고 있다.
- <197> 이와 같은 실시형태에 있어서의 콘텐츠 구입 처리는 도 5a에 도시한 플로 차트와 기본적으로 유사하다. 다만, 도 5a의 스텝 S13(권리 데이터 기록)의 처리를, 도 14에 도시한 바와 같이 변경하고 있다. 먼저, 서버 장치(2)로부터 권리 데이터가 보내져 오면, CPU(41)는 휴대 재생 장치(4)에 부여된(또는 사용자에게 부여된) 개체 식별 번호를 판독한다(스텝 S13a). 이 개체 식별 번호는 하드웨어적으로 기록되어 있거나, 또는 메모리 카드 등에서 휴대 재생 장치(4)에 장착된 것에 기록되어 있는 것이 일반적이다.
- <198> 다음으로, CPU(41)는 수신된 권리 데이터를, 취득한 개체 식별 번호에 의거하여 암호화한다. 예를 들면, 도 16A에 도시한 바와 같은 권리 데이터가 서버로부터 송신되어 왔다고 하자. 또한, 여기서는, 구입한 콘텐츠의 권리 데이터만이 송신되어 오는 경우를 전제로 하여 예를 나타낸다.
- <199> CPU(41)는 이 권리 데이터에 대하여, 도 16B에 도시한 개체 식별 번호에 의거하여 가역적인 신호화를 실시하고, 도 16C와 같은 암호화 권리 데이터를 얻는다(스텝 S13b). 암호화의 알고리즘은 주지의 수법을 이용할 수 있다. 또한, 도 16c의 예에서는, 권리 데이터 중의 타이틀 부분("에브리씽"의 부분)에 대해서는 암호화하지 않고, 콘텐츠 부호의 부분("315241"의 부분)에 대해서만 암호화를 행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타이틀 부분도 포함하여 암호화를 행하도록 해도 무방하다.
- <200> CPU(41)는 암호화한 권리 데이터를 가반성 기록 매체(550)에 기록한다(스텝 S13c).
- <201> 이와 같이 하여 가반성 기록 매체(550)에 기록한 권리 데이터에 의거하여, 콘텐츠를 재생하는 경우의 처리는 도 5b에 도시한 플로 차트와 기본적으로 유사하다. 다만, 스텝 S18(권리 데이터의 송신)의 처리 내용이, 도 15에 도시한 바와 같이 상이하다.
- <202> CPU(41)는 재생 장치(6)와의 통신이 확립되면, 가반성 기록 매체(550)로부터 암호화된 권리 데이터를 판독한다(스텝 S18a). 또한, 복수개의 권리 데이터가 기록되어 있는 경우에는, 모든 권리 데이터를 판독한다. 다음으로, CPU(41)는 휴대 재생 장치(4)의 개체 식별 번호를 판독한다(스텝 S18b). 계속하여, 암호화된 권리 데이터를, 개체 식별 번호에 의해 복호화한다(스텝 S18c). 또한, CPU(41)는 복호화된 권리 데이터를, 재생 장치(6)에 송신한다(스텝 S18d).
- <203> 본 실시형태에 따르면, 권리를 구입했을 때에 이용한 휴대 재생 장치(4)와 상이한 휴대 재생 장치를 이용하여 재생 장치(6)에 있어서의 콘텐츠 재생을 행하고자 하면, 개체 식별 번호가 상이하기 때문에 올바른 권리 데이터를 복원할 수 없다. 따라서, 부정할 콘텐츠 재생을 방지할 수 있다.
- <204> 또한, 상기 실시형태에서는, 권리 데이터를 개체 식별 번호로 암호화하여, 가반성 기록 매체(50)에 기록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권리 데이터와 개체 식별 번호를 조합한 데이터를 가반성 기록 매체(50)에 기록하도록 해도 무방하다. 이 경우에도, 개체 식별 번호가 합치하지 않으면, 올바른 권리 데이터가 아니라고 판정함으로써 부정 한 재생을 방지할 수 있다.

<205> 4.6 도중 재생

<206> 도 17, 도 18에, 재생 장치(6)에 의한 콘텐츠의 재생 위치를 기록해 두고, 동일 또는 상이한 재생 장치에 있어서, 당해 콘텐츠의 후속부터 재생할 수 있는 시스템의 플로 차트를 도시한다. 본 실시형태에 따르면, 권리 데이터를 갖는 자만이 콘텐츠를 재생할 수 있도록 하여 부정을 방지할 수 있음과 아울러, 권리 데이터만 갖고 있으면, 상이한 재생 장치에 있어서도 콘텐츠의 후속을 재생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할 수 있다.

<207> 먼저, 사용자는 휴대 재생 장치(4)를 가지고 재생 장치(6)의 근방(근거리 통신이 가능한 정도)에 가까이 가고, 조작부(45)를 조작하여 재생 장치(6)와의 통신을 개시한다(스텝 S81). 이 통신 개시는 구체적으로는 도 9의 화면에 도시한 바와 같이, 리모콘 모드를 선택함으로써 행해진다. 또는, 휴대 재생 장치(4)를 재생 장치(6)에 가깝게 함으로써 자동적으로 근거리 통신이 개시되도록 해도 무방하다.

<208> 다음으로, 휴대 재생 장치(4)의 CPU(41)는 기록되어 있는 권리 데이터를 판독하여, 콘텐츠 일람을 디스플레이(47)에 표시한다(스텝 S82). 사용자가 조작부(45)를 조작하여 콘텐츠를 선택하면(스텝 S83), CPU(41)는 당해 콘텐츠에 대하여 메모리(43)에 중단 위치가 기록되어 있는지의 여부를 판단한다(스텝 S84). 여기서, 중단 위치가 기록되어 있지 않는 것으로서 설명을 진행한다.

<209> CPU(41)는 선택된 콘텐츠의 재생 지령을, 근거리 통신 회로(56)를 통하여 재생 장치(6)에 송신한다(스텝 S87). 이것을 받은 재생 장치(6)의 CPU(41)는 당해 콘텐츠의 권리 존재 확인을 휴대 재생 장치(4)에 송신한다(스텝 S95). 또한, 도 17에 있어서는 명시되어 있지 않지만, 재생 장치(6)에 의한 권리 존재 확인의 요구는 당해 콘텐츠가 재생되고 있는 동안은 소정 시간마다(예를 들면 5분 걸러, 또는 랜덤한 시간 간격으로) 이루어진다. 따라서, 휴대 재생 장치(4)가 멀어지면, 콘텐츠의 재생이 정지되게 된다.

<210> 권리 존재 확인의 요구를 받은 휴대 재생 장치(4)의 CPU(41)는 당해 콘텐츠의 권리 데이터가, 메모리(43)에 기록되어 있는지의 여부를 판단한다(스텝 S88). 권리 데이터가 존재하면, 재생 허가 신호를 재생 장치(6)에 송신한다(스텝 S89).

<211> 재생 장치(6)는 재생 허가 신호를 받아서, 당해 콘텐츠의 재생을 행한다(스텝 S96, S97).

<212> 콘텐츠 재생 중에, 사용자가 휴대 재생 장치(4)의 조작부(45)를 조작하여 콘텐츠 재생의 중단을 행했다고 하자. 이 재생 중단 지령은 재생 장치(6)에 송신된다(스텝 S90). 이것을 받은 재생 장치(6)는 콘텐츠의 재생을 중단한다(스텝 S98). 계속하여, 당해 중단 위치(예를 들면 콘텐츠 데이터에 포함되어 있는 콘텐츠 개시로부터의 경과 시간 등)를 취득하여, 휴대 재생 장치(4)에 송신한다(스텝 S99). 휴대 재생 장치(4)의 CPU(41)는 중단 위치를 수신하고, 콘텐츠 ID 등과 대응지어서, 이것을 메모리(43)에 기록한다.

<213> 또한, 사용자가 휴대 재생 장치(4)의 조작부(45)로부터 재생 중단을 입력한 경우뿐만 아니라, 휴대 재생 장치(4)가 재생 장치(6)로부터 멀어져서 근거리 통신이 불가능하게 된 경우에도, 상기의 중단 위치의 기록을 행하도록 해도 무방하다. 다만, 이 경우에는 콘텐츠 재생 중에는 비교적 짧은 시간 간격으로(10초 마다 등) 항상 현재 재생 위치를 재생 장치(6)로부터 휴대 재생 장치(4)로 보내 둔다. 그리고, 통신이 끊어진 시점에 있어서의 최신의 재생 위치를 중단 위치로 하여, 휴대 재생 장치(4)에 기록하도록 해도 무방하다.

<214> 다음으로, 제차, 동일한 콘텐츠를 재생하고자 하는 경우의 처리를 설명한다. 도 17의 스텝 S81로부터 S83까지는 상술한 바와 동일한 처리이다. 스텝 S84에 있어서, 휴대 재생 장치(4)의 CPU(41)는 선택된 콘텐츠에 대하여 메모리(43)에 중단 위치가 기록되어 있는지의 여부를 판단한다.

<215> 중단 위치가 기록되어 있으면, 이것을 판독하고, 당해 중단 위치를 재생 개시 위치로서 지정하고, 콘텐츠 재생 지령을 송신한다(스텝 S86, S87). 이것을 수신한 재생 장치(6)는 당해 재생 개시 위치로부터 콘텐츠의 재생을 개시한다. 또한, 콘텐츠의 재생이 최후까지 행해진 경우에는 재생 장치(6)는 휴대 재생 장치(4)에 대하여, 그 취지를 송신한다. 휴대 재생 장치(4)는 이것을 받아서, 중단 위치를 소거한다.

<216> 상기와 같이, 본 실시형태에 따르면, 도중까지 보고 있던 콘텐츠를 중단 부분부터 재생할 수 있다. 또한, 재생할 재생 장치(6)가 바뀌더라도, 이 기능을 끊김 없이 실현할 수 있다.

<217> 4.7 통신 기능을 갖지 않는 기기への 대응

- <218> 상기 각 실시형태에서는, 근거리 통신 내지 광역 통신을 행할 수 있는 재생 장치(6)를 이용하고 있다. 재생 장치(6) 자체에 통신 기능이 없는 경우에는, 통신 기능을 외장하면 상기 각 실시형태와 유사한 기능을 실현할 수 있다.
- <219> 도 19a에, 인터넷과의 통신 기능을 갖지 않는 카 내비게이션 장치에 있어서, 본 발명을 적용한 경우의 시스템 구성을 도시한다. 카 내비게이션 장치(210)에는, 휴대 전화 접속용의 어댑터(220)를 통하여, 휴대 전화(4)(권리 증명 장치로서의 휴대 재생 장치)가 접속되어 있다.
- <220> 도 19a의 시스템의 기능 블록도를, 도 19b에 도시한다. 도면에 도시한 바와 같이, 카 내비게이션 장치(210)는 어댑터(220), 휴대 전화(4)를 통하여, 서버 장치(2)로부터 재생 장치용 콘텐츠를 취득한다. 즉 휴대 전화(4)의 취득 수단(44)이 서버 장치(2)로부터 취득한 재생 장치용 콘텐츠를, 카 내비게이션 장치(210)의 취득 수단(62)이, 어댑터(220)를 통하여 취득하고 있다. 재생 시에는, 어댑터(220)에 의해 유선의 근거리 통신을 행하여, 권리 인증을 한다.
- <221> 도 19c에, 적외선 통신 기능(근거리 통신)밖에 갖지 않는 오디오 기기(230)(스테레오 장치 등)에, 본 발명을 적용한 경우의 시스템 구성을 도시한다. 휴대 전화(4)와 오디오 기기(230)는 적외선 통신에 의해 통신 가능하다.
- <222> 도 19c의 시스템의 기능 블록도를, 도 19d에 도시한다. 도면에 도시한 바와 같이, 오디오 기기(230)는 휴대 전화(4)를 통하여 서버 장치(2)로부터 재생 장치용 콘텐츠를 취득한다. 즉 휴대 전화(4)의 취득 수단(44)이 서버 장치(2)로부터 취득한 재생 장치용 콘텐츠를, 오디오 기기(230)의 취득 수단(62)이, 근거리 통신에 의해 취득하고 있다. 재생 시에는 근거리 통신에 의해 권리 인증을 행한다.
- <223> 4.8 기타
- <224> 상기 실시형태에서는, 휴대 재생 장치로부터 재생 장치에 대하여 재생 지시를 부여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재생 장치에 설치된 재생 버튼이나 재생 장치에 부착된 리모콘 장치 등에 의해 재생 지시를 부여하도록 해도 무방하다.
- <225> 상기 실시형태에서는, 권리 증명 장치인 휴대 재생 장치는 인터넷에 의해 서버 장치(2)와 통신을 행하여 권리 데이터를 취득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원 세그먼트 방송과 같은 데이터 방송, 메일 등에 의해 서버 장치로부터 권리 데이터를 취득하도록 해도 무방하다.
- <226> 또한, 상기 실시형태에서는, 권리 발행 장치로서의 서버 장치(2)로부터 권리 데이터를 취득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권리 데이터를 기록한 PC를 권리 발행 장치로 하고, 근거리 통신(툴카(상표) 등)에 의해 권리 데이터를 취득하도록 해도 무방하다. 또한, 권리 데이터를 기록하고 있는 다른 권리 증명 장치를 권리 발행 장치로 하고, 광역 통신 경유(이른바 P2P 통신)로, 또는 근거리 통신으로 권리 데이터를 취득하도록 해도 무방하다. 또한, 권리 증명 장치는 가반성 기록 매체를 통하여, 권리 데이터를 취득하도록 해도 무방하다.
- <227> 상기 실시형태에서는, 유료로 권리 데이터를 구입하는 경우에 대하여 설명하였으나, 무료로 권리 데이터를 취득하도록 해도 무방하다.
- <228> II. 제2 실시형태
- <229> 1. 시스템의 전체 구성
- <230> 도 20에, 다른 실시형태에 따른 콘텐츠 제공 시스템의 전체 구성을 도시한다. 이 시스템은 서버 장치(2), 리라이트 장치(5), 권리 증명 장치(7), 재생 장치(6)를 구비하고 있다. 권리 증명 장치(7)는 예를 들면 비접촉형 IC 카드, 비접촉형 IC(페리카(상표) 등)를 내장한 휴대 전화 장치이다. 리라이트 장치(5)는 권리 증명 장치(7)의 권리 기록부(50)의 내용을 리라이트하는 것이다.
- <231> 서버 장치(2)는 광역 통신부(24)를 구비하고 있으며, 인터넷 등의 광역 통신망을 통하여 통신을 행한다. 재생 장치(6)에도 광역 통신부(60)가 설치되어 있으며, 서버 장치(2)와의 사이에서, 인터넷 등의 광역 통신망을 통하여 통신을 행한다.
- <232> 권리 증명 장치(7)의 취득 수단(44)은 리라이트 장치(5)를 통하여 서버 장치(2)의 대(對) 증명 장치 송출 수단(20)으로부터의 권리 데이터를 수신한다. 권리 증명 장치(7)의 취득 수단(44)은 수신한 권리 데이터를 권리 기록부(50)에 기록한다.
- <233> 서버 장치(2)의 대(對) 재생 장치 송출 수단(22)은 재생 장치(6)에 대하여, 재생 장치용 콘텐츠를 송신한다. 재

생 장치(6)의 취득 수단(62)은 광역 통신부(60)를 통하여 이것을 수신하고, 콘텐츠 기록부(64)에 기록한다.

- <234> 권리 증명 장치(7)와 재생 장치(6)가 근거리 통신부(56, 72)에 의해 통신을 확립하면, 권리 증명 장치(7)의 권리 상황 송신 수단(48)은 권리 기록부(50)에 기록되어 있는 권리 데이터에 의거한 권리 상황 데이터를 재생 장치(6)에 송신한다.
- <235> 재생 장치(6)의 재생 지시 취득 수단(66)은 재생 장치용 콘텐츠에 대한 사용자로부터의 재생 지시를 수취한다. 권리 인증 수단(68)은 권리 증명 장치(7)로부터 송신되어 온 권리 상황 데이터에 의거하여, 재생 지시가 이루어진 콘텐츠의 권리가 있는지의 여부를 판단한다. 권리가 있다고 판단되면, 재생 수단(70)에 의해, 콘텐츠 기록부(64)에 기록되어 있는 재생 장치용 콘텐츠를 재생한다. 권리가 없다고 판단되면, 재생을 허가하지 않는다.
- <236> 상기와 같이 하여, 권리를 갖는 권리 증명 장치(7)가 근거리 통신이 가능한 범위 내에 있다는 것을 조건으로 재생 장치용 콘텐츠를 재생할 수 있다.
- <237> 2. 하드웨어 구성
- <238> 2.1 권리 증명 장치(7)의 하드웨어 구성
- <239> 도 21a에, 권리 증명 장치(7)의 하드웨어 구성을 도시한다. CPU(41)에는 메모리(43), 근거리 통신 회로(56)가 접속되어 있다. 안테나(57)가 설치되어 있으며, 리라이트 장치(5)나 재생 장치(6)에 가까이 감으로써, 전자 결합에 의해 이들 장치로부터 전원의 공급을 받는다. 또한, 이 안테나(57)는 근거리 통신 회로(56)의 안테나로서도 사용된다. 또한, 이와 같은 패시브 회로가 아니라, 스스로 전원을 갖는 액티브 회로 구성으로 해도 무방하다.
- <240> 메모리(43)에는 제어 프로그램(도시하지 않음)이 기록되어 있다. 또한, 메모리(43)에는 권리 데이터가 기록된다.
- <241> 2.2 재생 장치(6), 서버 장치(2), 리라이트 장치(5)의 하드웨어 구성
- <242> 재생 장치(6), 서버 장치(2)의 하드웨어 구성은 제1 실시형태와 유사하다. 다만, 재생 장치(6)의 근거리 통신부(72)는 권리 증명 장치(56)의 안테나(57)와 전자 결합하여 전력을 공급하는 기능을 갖고 있다.
- <243> 리라이트 장치(5)의 하드웨어 구성을 도 21b에 도시한다. CPU(80)에는 하드 디스크(82), 광역 통신 회로(84), 디스플레이(86), 리더/라이터(88), 조작부(90)가 접속되어 있다. 하드 디스크(82)에는 제어를 위한 프로그램이 기록되어 있다. 리더/라이터(88)는 패시브 IC 카드의 리라이트를 행하기 위한 일반적인 회로(페리카(상표)의 리더 라이터 등)이다. 광역 통신 회로(84)는 서버 장치(2)와 통신을 하기 위한 회로이다.
- <244> 3. 콘텐츠 제공 처리
- <245> 도 22a에, 콘텐츠의 권리를 구입하는 처리의 플로 차트를 도시한다. 권리 증명 장치(7)를 리라이트 장치(5)의 리더/라이터(88)에 가깝게 하면, 권리 증명 장치(7)에 전력이 공급되고, 통신이 확립된다(스텝 S121, S141). 통신이 확립되면, 리라이트 장치(5)는 서버 장치(2)에 대하여 구입 화면의 요구를 행한다(스텝 S122). 이 때, 리라이트 장치(5)는 권리 증명 장치(7)에 기록되어 있는 사용자 ID를 판독하여 서버 장치(2)에 송신한다. 이것을 받아서, 서버 장치(2)는 구입 화면을 송신한다(스텝 S101). 이 때, 서버 장치(2)는 각 콘텐츠의 콘텐츠 식별자도 송신한다. 리라이트 장치(5)는 디스플레이(86)에 구입 화면(도 7 참조)을 표시한다.
- <246> 오퍼레이터 또는 사용자가, 조작부(90)를 조작하여, 희망하는 콘텐츠를 선택한다. 이에 따라, 리라이트 장치(5)는 당해 콘텐츠의 구입 요구를 서버 장치(2)에 송신한다(스텝 S123). 이 구입 요구에는 선택된 콘텐츠의 콘텐츠 식별자도 포함하여 송신된다.
- <247> 서버 장치(2)에서는, 콘텐츠 식별자를 포함하는 구입 요구를 받아서, 결제 처리를 행한다. 서버 장치(2)의 하드 디스크(23)에는 각 사용자마다 권리 폴더가 설치되고, 당해 폴더 중에, 모든 콘텐츠의 권리 데이터가 기록되어 있다. 서버 장치(2)는 당해 사용자의 권리 폴더에 기록되어 있는 구입된 콘텐츠의 권리 데이터에 대하여, 그 플래그를 "미구입 상태"로부터 "구입 상태"로 한다(스텝 S102). 권리 데이터의 데이터 구조는 도 8과 유사하다.
- <248> 서버 장치(2)는 당해 사용자의 권리 폴더 중의 모든 권리 데이터를 휴대 재생 장치(4)에 송신한다(스텝 S102). 리라이트 장치(5)는 수신한 권리 데이터를 권리 증명 장치(7)에 전송한다(스텝 S124). 권리 증명 장치(7)는 수신한 권리 데이터를 메모리(43)에 기록한다(스텝 S142). 또한, 서버 장치(2)는 모든 권리 데이터를 송신하지 않고, 구입된 콘텐츠의 권리 데이터만을 송신하도록 해도 무방하다.

- <249> 상기와 같이 하여 권리 증명 장치(7)에 권리가 기록된다. 구입한 콘텐츠를 재생하는 경우에는, 재생 장치(6)에 권리 증명 장치(7)를 가깝게 하고, 재생 지령을 부여해도 무방하다.
- <250> 도 22b에, 콘텐츠를 재생하는 경우의 처리 플로 차트를 도시한다. 권리 증명 장치(7)를 재생 장치(6)에 가깝게 하면, 통신이 확립된다(스텝 S125, 스텝 S143). 통신이 확립되면, 권리 증명 장치(7)는 메모리(43)로부터 권리 데이터를 판독하여 재생 장치(6)에 송신한다(스텝 S126). 재생 장치(6)는 이것을 수신하여 메모리(67)에 기억한다(스텝 S144). 계속하여, 재생 장치(6)는 권리 데이터에 의거하여 콘텐츠의 일람을 디스플레이(69)에 표시한다(스텝 S145). 이 표시 화면은 도 10과 같이 된다.
- <251> 사용자는 재생 장치(6)의 조작부(65)를 조작하여 콘텐츠를 선택하고, 재생 지령을 입력한다(스텝 S146). 이후의 처리는 도 5b의 스텝 S32 이하와 유사하게 하여 행해지고, 콘텐츠의 재생이 이루어진다.
- <252> 4. 기타 실시형태
- <253> 4.1 무선 터미널에의 응용
- <254> 도 23에, 무선 LAN의 액세스 포인트(200)(근거리 통신 장치)에 권리 인증 수단을 설치한 예를 도시한다. 액세스 포인트(200)는 PC(202), 텔레비전(204), 오디오 기기(206) 등과 무선 LAN을 구축하기 위한 베이스 유닛이다. 이 실시형태에서는, 액세스 포인트(200)에 휴대 전화(권리 증명 장치인 휴대 재생 장치(4))와 통신하기 위한 근거리 통신부(72)(예를 들면 페리카(상표))를 갖고 있으며, 또한 권리 인증 수단(68)을 가지고 있다.
- <255> 무선 LAN에 의해 접속된 PC(202), 텔레비전(204), 오디오 기기(206)(이들을 재생 기기라 함) 중의 어느 하나에 있어서 사용자가 콘텐츠의 재생 지령을 부여하면, 이 콘텐츠에 대한 재생 지령은 액세스 포인트(200)에 송신된다. 그리고, 액세스 포인트(200)의 근거리 통신부(72)가 휴대 전화와 통신하고, 권리 데이터를 취득한다. 권리 인증 수단(68)은 재생 지령이 이루어진 콘텐츠의 권리 데이터가, 있는지의 여부를 판단하여, 재생의 허가, 불허가를 PC(202), 텔레비전(204) 또는 오디오 기기(206)에 송신한다.
- <256> 따라서, 이 실시형태에 따르면, 각 기기에 근거리 통신부(72)나 권리 인증 수단(68)을 설치하지 않더라도, 액세스 포인트(200)에 있어서 일괄적으로 이 처리를 행할 수 있다. 또한, 이 실시형태에서는, 재생 기기와 근거리 통신 장치에 의해, 재생 장치가 구성되어 있게 된다.
- <257> 4.2 기타
- <258> 제1 실시형태에 있어서 설명한 "기타 실시형태"는 제2 실시형태에도 적용할 수 있다.
- <259> III. 제3 실시형태
- <260> 상기 각 실시형태에서는, 재생 장치용 콘텐츠를, 인터넷 등을 통하여 재생 장치에 기록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CD-ROM 등의 기록 매체에, 콘텐츠를 암호화하여 기록하여 이것을 배포하도록 해도 무방하다. 이 경우에는, 권리 데이터는 당해 콘텐츠의 암호를 풀기 위한 키를 포함하는 것으로 해도 무방하다.
- <261> 구체적으로는, 암호화 콘텐츠가 기록된 CD-ROM 등을 재생 장치(6)에 세트하고, 권리 데이터가 기록된 권리 증명 장치(휴대 전화 등)(4)를 가깝게 함으로써, 인증을 행하고 콘텐츠를 재생할 수 있다. 도 24에, 이 시스템의 전체 구성을 도시한다.
- <262> 권리 상황 송신 수단(48)은 권리 기록부에 기록되어 있는 암호 키를 판독하여, 오디오 기기(230)에 송신한다. 권리 인증 수단(68)은 수취한 암호 키를 재생 수단(70)에 넘긴다. 재생 수단(70)은 CD-ROM(71)에 기록된 암호화 콘텐츠를 암호 키에 의해 복호하여 재생을 행한다.
- <263> 또한, 도 25에 도시한 바와 같이, 오디오 기기(230)(기타 재생 장치이어도 무방하다)에, 가반성 기록 매체의 판독 인터페이스(502)를 설치해도 무방하다. 사용자는 휴대 전화(4) 등을 이용하여 서버 장치(2)로부터 권리 데이터를 취득하고, 가반성 기록 매체(500)에 기록한다. 콘텐츠(암호화된 콘텐츠)는 상기와 같이 하여, CD-ROM(71) 등의 매체로 구입한다.
- <264> 재생 시에는 CD-ROM(71)을 오디오 기기(230)에 세트하고, 인터페이스(502)에, 당해 콘텐츠에 대응하는 권리 데이터가 기록된 가반성 기록 매체(500)를 접속한다. 권리 인증 수단(68)은 재생하고자 하는 콘텐츠에 대응하는 권리 데이터(암호 키)를 가반성 기록 매체로부터 판독한다. 그리고, 판독한 암호 키를 재생 수단(70)에 건넨다. 재생 수단(70)은 CD-ROM(71)에 기록된 암호화 콘텐츠를 암호 키에 의해 복호하여 재생을 행한다.
- <265> 상기와 같이 하여, 콘텐츠만으로는 재생이 불가능하도록 해 두고, 권리 데이터와 세트되어 비로소 재생이 가

능하도록 함으로써, 유통성과 부정 방지를 양립시킬 수 있다.

<266> IV. 기타 실시형태

<267> 본 발명에 따른 콘텐츠 제공 장치의 다른 실시형태를 도 26에 도시한다. 이 예에서는, 레스토랑 등의 점포 A와 점포 B의 각 테이블에 재생 장치인 PC가 설치되어 있다. 이 PC는 각각의 점포의 서버 장치에 접속되어 있다.

<268> 사용자는 휴대 재생 장치 또는 권리 증명 장치를 가지고 레스토랑 점포 A에 가서, PC를 통하여 서버 장치와의 통신을 행하고, 휴대 재생 장치 또는 권리 증명 장치에 제1 권리 데이터를 취득한다. 이 실시형태에서는, 무료로 구입을 행할 수 있는 것으로 한다. 이 제1 권리 데이터에 의해, 사용자는 PC 또는 서버 장치에 기록되어 있는 제1 콘텐츠를, PC의 화면 상에서 열람할 수 있다.

<269> 다음 번에, 사용자가 휴대 재생 장치 또는 권리 증명 장치를 가지고 레스토랑 점포 A에 가면, 제2 권리 데이터를 취득한다. 이 제2 권리 데이터에 의해, 사용자는 PC 또는 서버 장치에 기록되어 있는 제2 콘텐츠를, PC의 화면 상에 열람할 수 있다. 이와 같이, 점포에 방문한 횟수에 따라 열람 가능한 콘텐츠가 바뀌어 간다.

<270> 다음으로, 체인점인 점포 B를 방문하면, 제3 권리 데이터를 취득할 수 있다. 이것은 점포 A와 점포 B가 동일한 시스템을 채용하고 있으며, 서버 장치가 휴대 재생 장치 또는 권리 증명 장치에 기록되어 있는 권리 데이터를 판독하여, 제n번째의 권리 데이터인지를 판단하고, 제n+1번째의 권리 데이터를 부여하기 때문이다. 이와 같이, 각 점포의 서버 장치를 LAN 등에 의해 접속하지 않더라도, 상기와 같은 운용을 행할 수 있다.

도면의 간단한 설명

<69> 도 1은 본 발명의 일실시형태에 따른 콘텐츠 제공 시스템의 전체 구성도이다.

<70> 도 2는 휴대 재생 장치(4)의 하드웨어 구성을 도시한 도면이다.

<71> 도 3은 재생 장치(6)의 하드웨어 구성을 도시한 도면이다.

<72> 도 4는 서버 장치(2)의 하드웨어 구성을 도시한 도면이다.

<73> 도 5a는 각 장치의 제어 프로그램의 플로 차트이다.

<74> 도 5a는 각 장치의 제어 프로그램의 플로 차트이다.

<75> 도 5c는 각 장치의 제어 프로그램의 플로 차트이다.

<76> 도 5d는 각 장치의 제어 프로그램의 플로 차트이다.

<77> 도 6은 콘텐츠 테이블을 도시한 도면이다.

<78> 도 7은 구입 화면을 도시한 도면이다.

<79> 도 8은 권리 데이터의 구조를 도시한 도면이다.

<80> 도 9는 휴대 재생 장치(4)의 기능 선택 화면을 도시한 도면이다.

<81> 도 10은 휴대 재생 장치(4)의 콘텐츠 일람 화면을 도시한 도면이다.

<82> 도 11은 콘텐츠 구입 제안 화면을 도시한 도면이다.

<83> 도 12는 다른 실시형태를 도시한 도면이다.

<84> 도 13은 권리 데이터를 가반성 기록 매체(550)에 기록하는 경우의, 휴대 재생 장치(4)의 예를 도시한 도면이다.

<85> 도 14는 도 13의 시스템에 있어서의 권리 데이터를 기록하는 처리 부분의 플로 차트이다.

<86> 도 15는 도 13의 시스템에 있어서의 권리 데이터를 판독하는 처리 부분의 플로 차트이다.

<87> 도 16은 권리 데이터 및 개체 식별 번호의 예를 도시한 도면이다.

<88> 도 17은 도중 재생을 가능하게 한 시스템의 처리 플로 차트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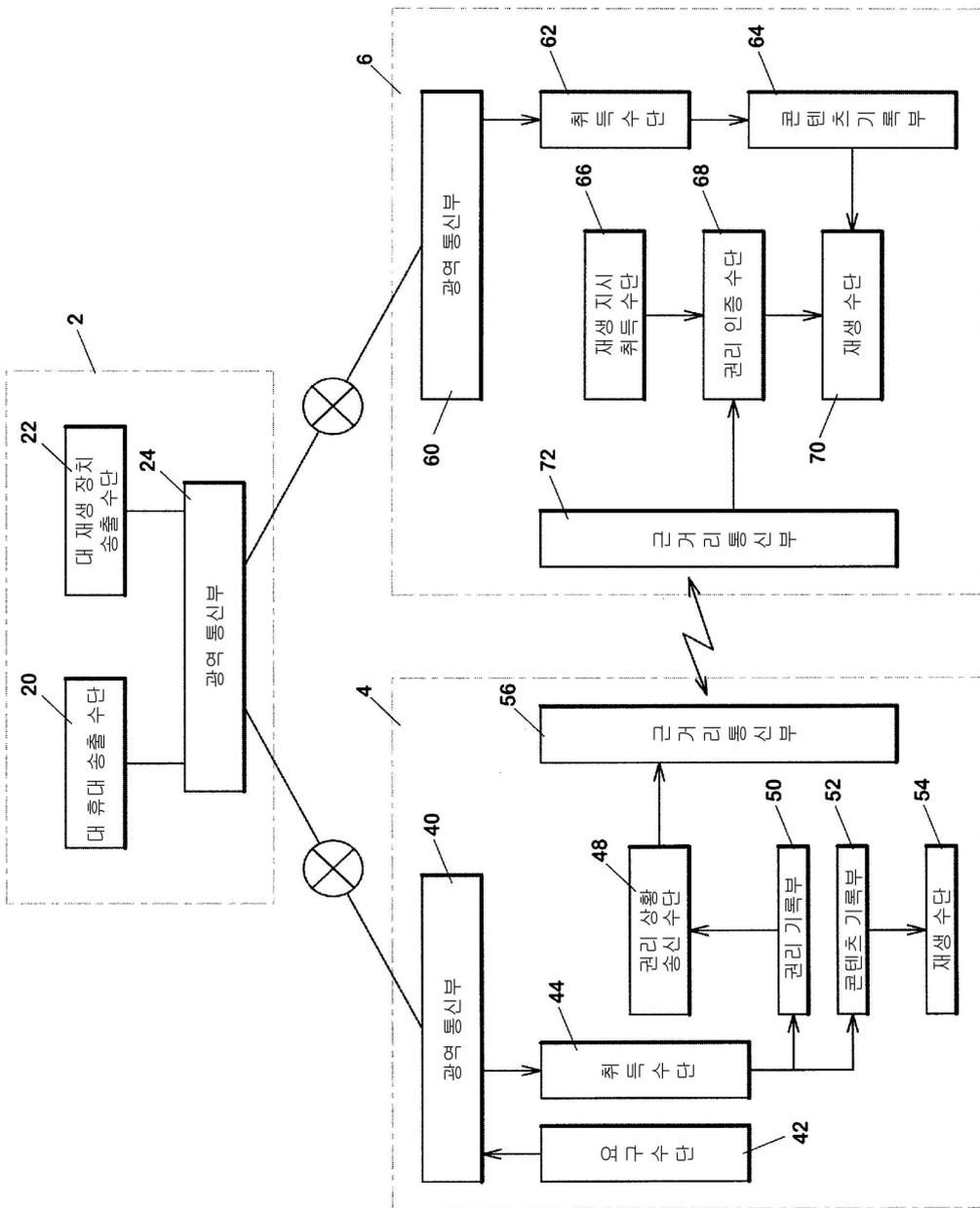
<89> 도 18은 도중 재생을 가능하게 한 시스템의 처리 플로 차트이다.

<90> 도 19a는 광역 통신 기능이 없는 카 내비게이션 장치에 있어서, 본 발명을 적용한 경우의 시스템 구성도이다.

- <91> 도 19b는 광역 통신 기능이 없는 카 내비게이션 장치에 있어서, 본 발명을 적용한 경우의 시스템 구성도이다.
- <92> 도 19c는 광역 통신 기능이 없는 오디오 기기에 있어서, 본 발명을 적용한 경우의 시스템 구성도이다.
- <93> 도 19d는 광역 통신 기능이 없는 오디오 기기에 있어서, 본 발명을 적용한 경우의 시스템 구성도이다.
- <94> 도 20은 제2 실시형태에 따른 콘텐츠 제공 시스템의 전체 구성도이다.
- <95> 도 21a는 권리 증명 장치(7)의 하드웨어 구성을 도시한 도면이다.
- <96> 도 21b는 리라이트 장치(5)의 하드웨어 구성을 도시한 도면이다.
- <97> 도 22a는 각 장치의 제어 프로그램의 플로 차트이다.
- <98> 도 22b는 각 장치의 제어 프로그램의 플로 차트이다.
- <99> 도 23은 액세스 포인트(200)에 복수개의 재생 기기가 접속된 시스템에 있어서의 적용예이다.
- <100> 도 24는 재생 장치용 콘텐츠를 기록 매체에 기록하여 배포하는 경우의 시스템 구성도이다.
- <101> 도 25는 가반성 기록 매체(500)와 재생 장치(230)가 직접 접속되는 경우의 시스템 구축예이다.
- <102> 도 26은 다른 실시형태에 따른 콘텐츠 제공 시스템을 도시한 도면이다.
- <103> (부호의 설명)
- <104> 40: 광역 통신부
- <105> 42: 요구 수단
- <106> 44: 취득 수단
- <107> 48: 권리 상황 송신 수단
- <108> 50: 권리 기록부
- <109> 52: 콘텐츠 기록부
- <110> 54: 재생 수단
- <111> 56: 근거리 통신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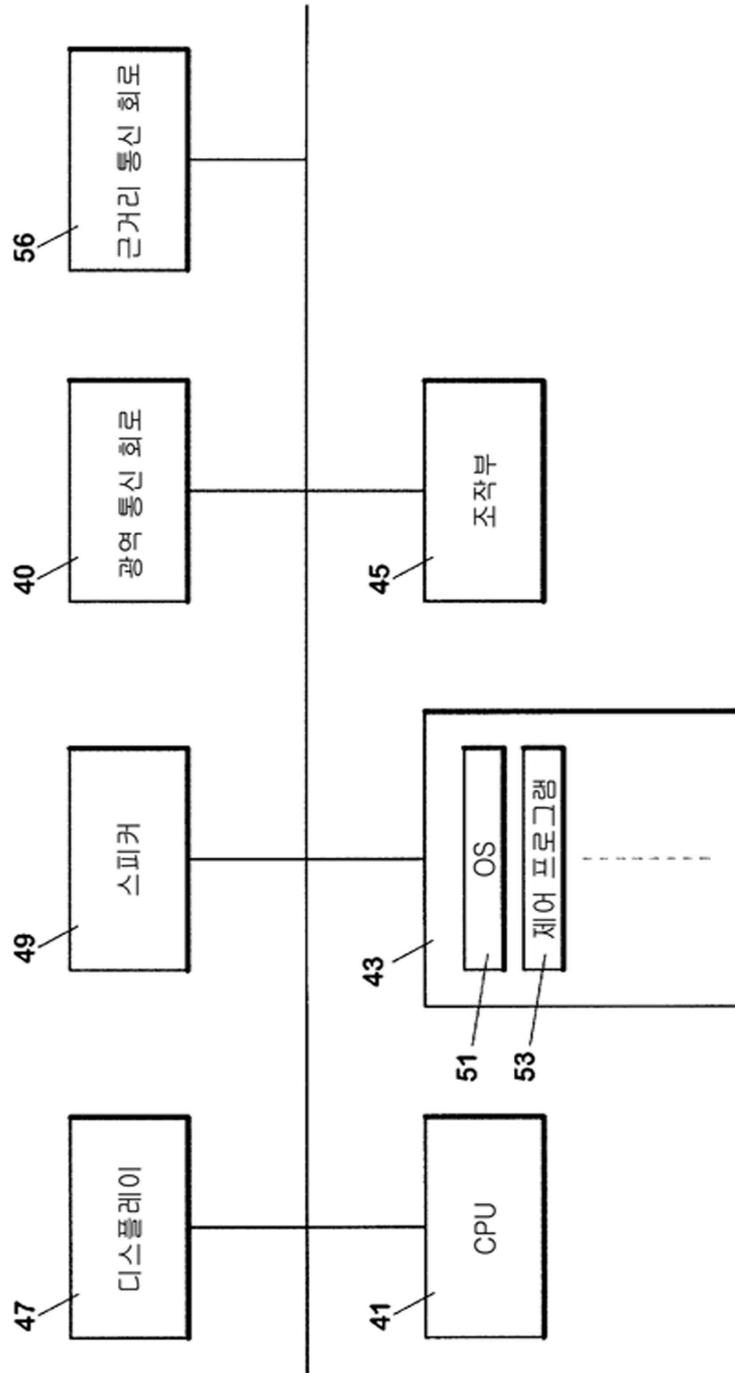
도면

도면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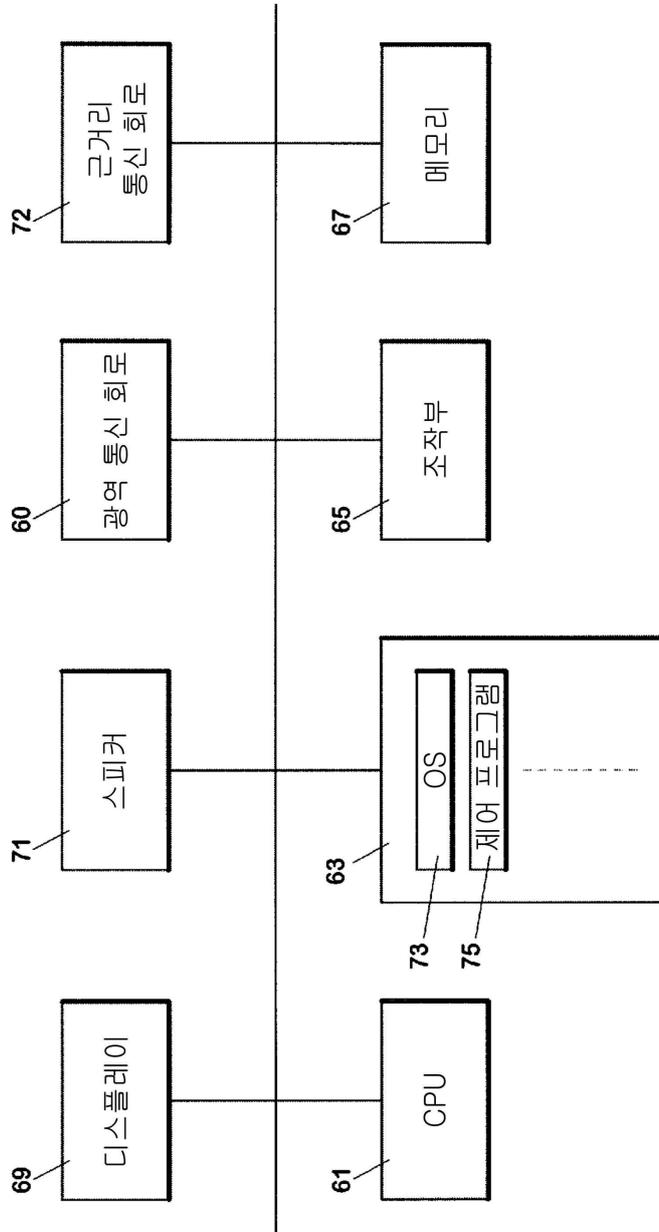
도면2

휴대 재생 장치(4)의 하드웨어 구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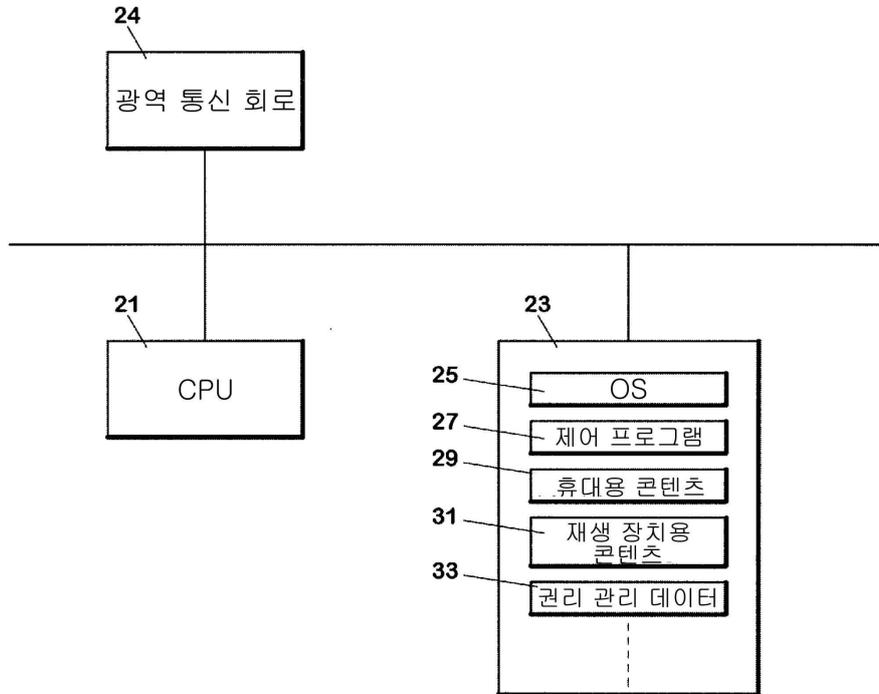
도면3

재생 장치(6)의 하드웨어 구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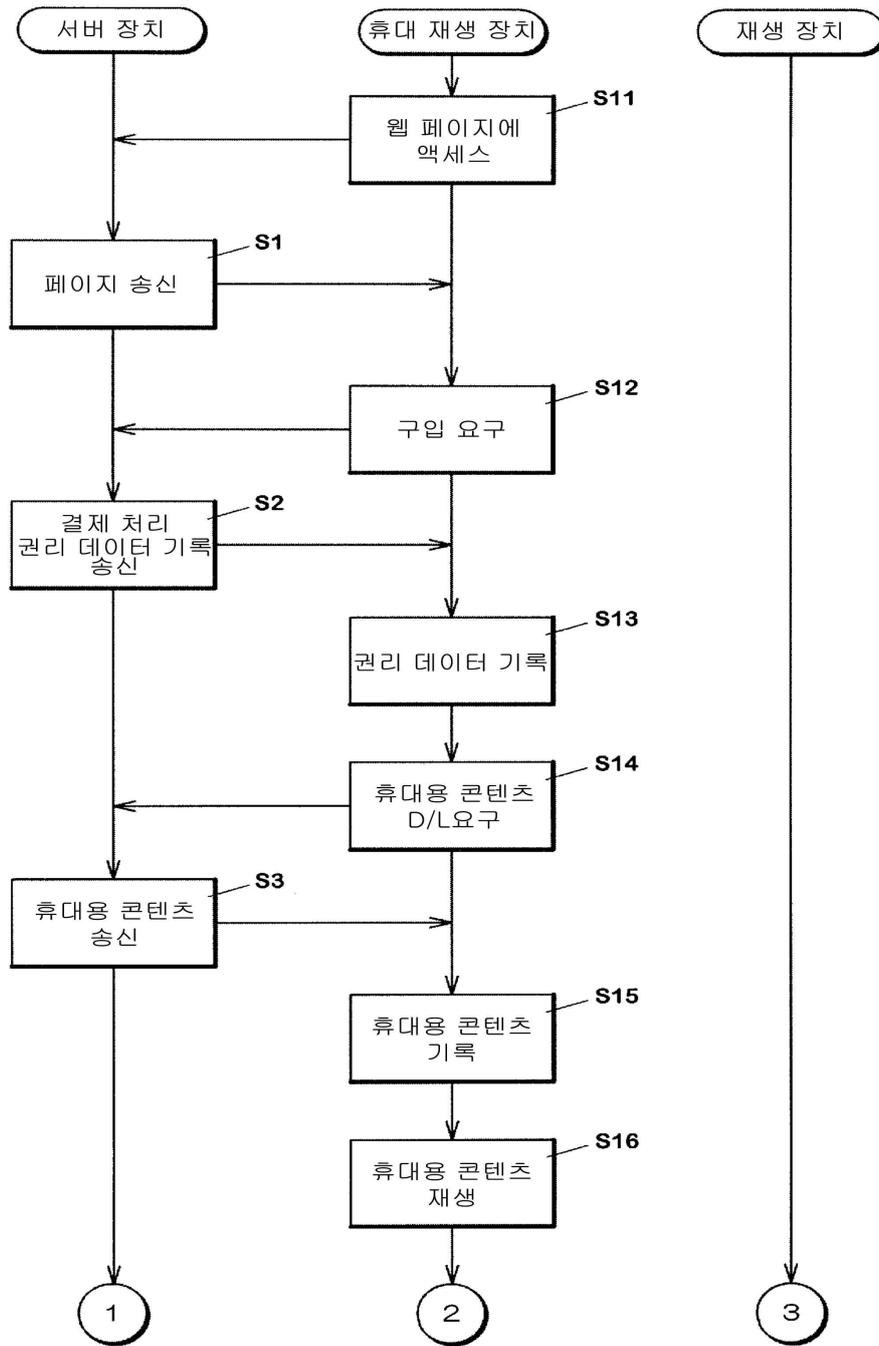


도면4

서버 장치(2)의 하드웨어 구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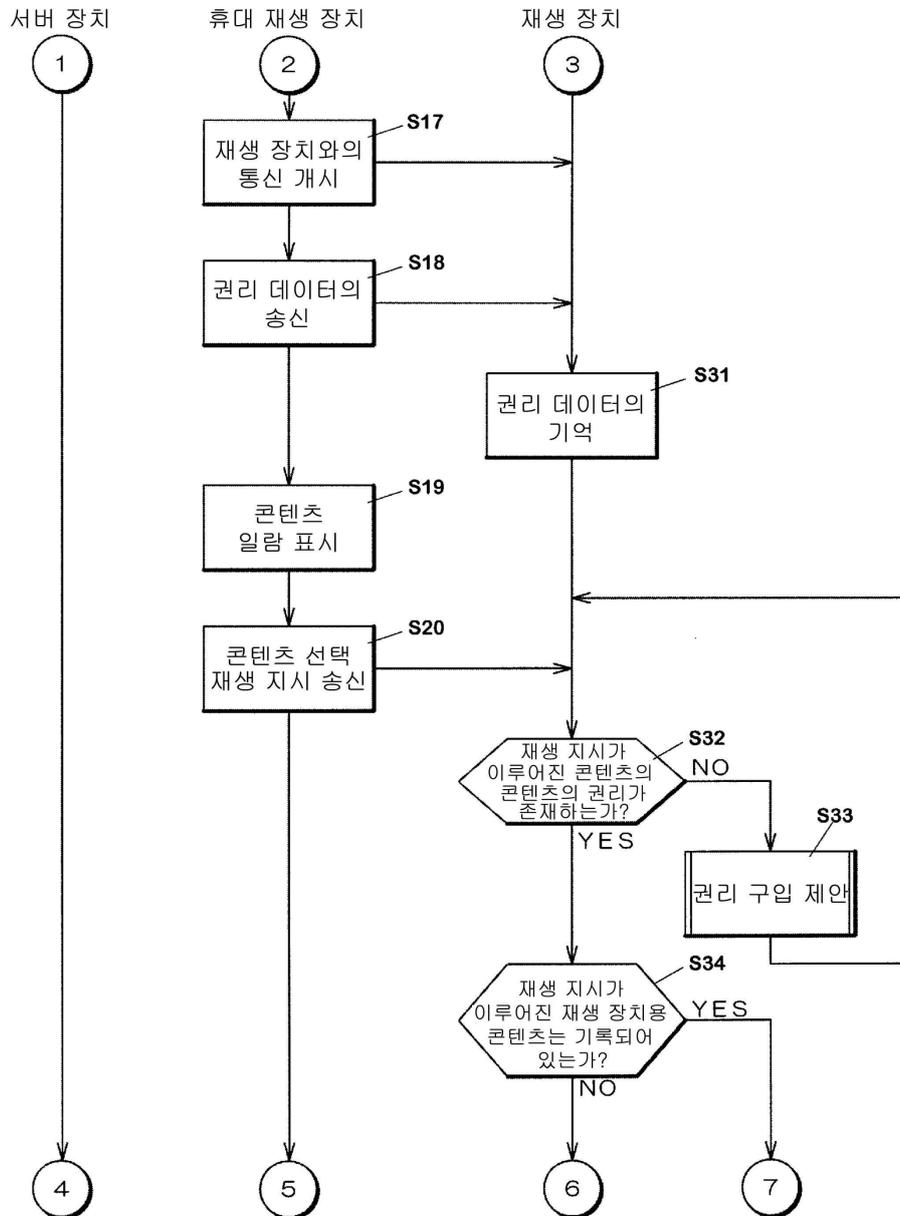


도면5a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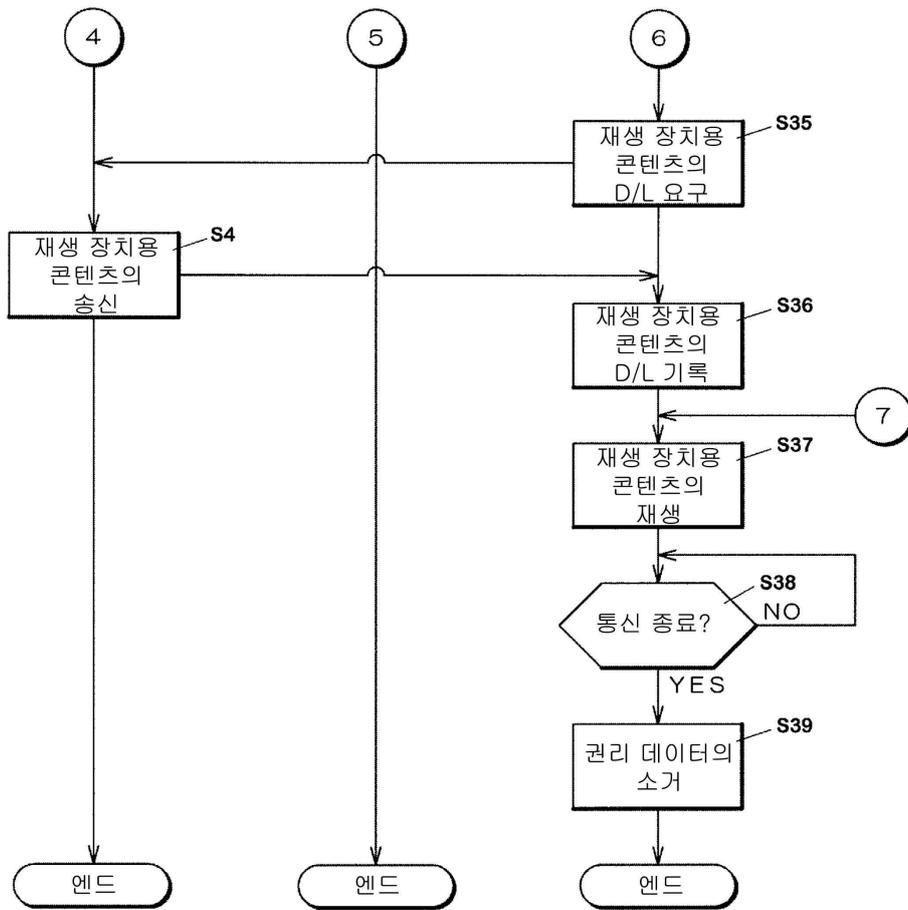


도면5b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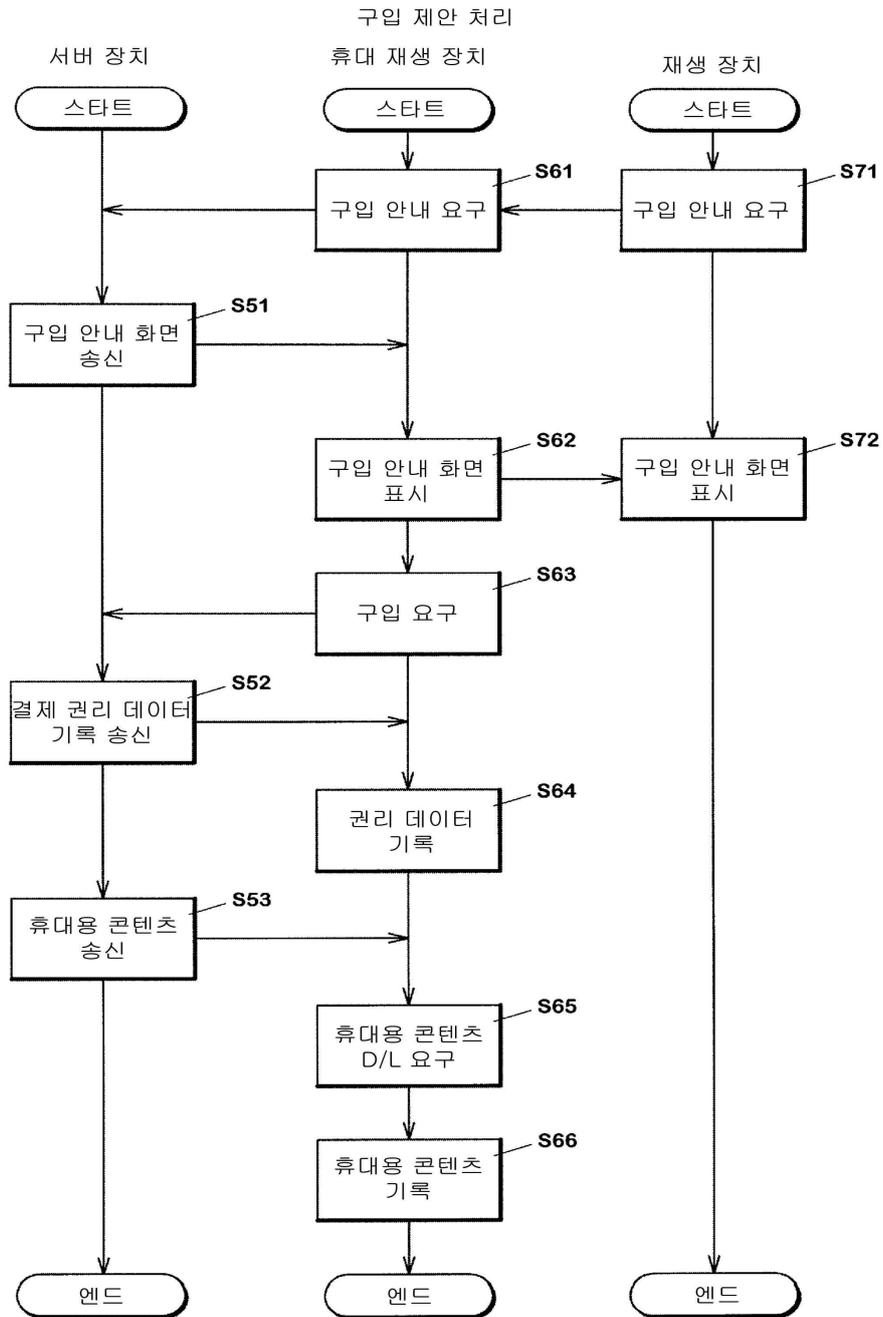
재생 장치 콘텐츠의 재생 시의 처리



도면5c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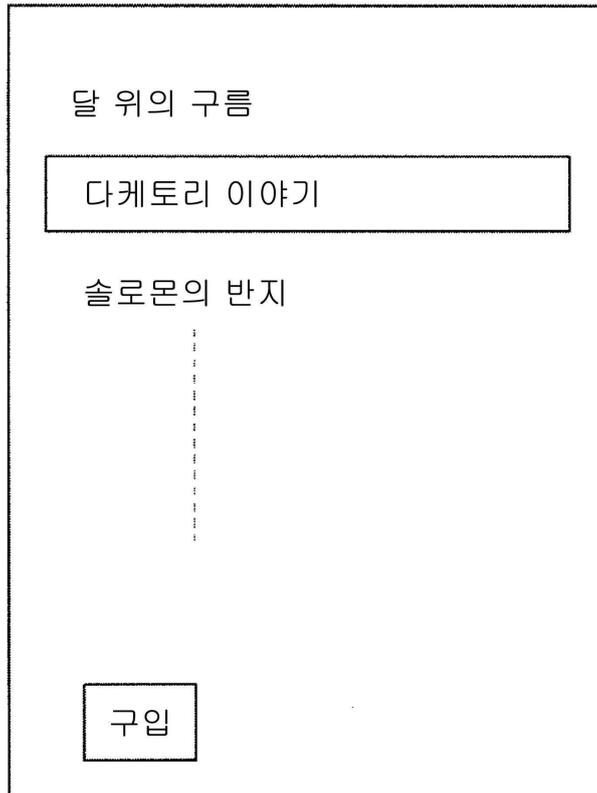
도면5d



도면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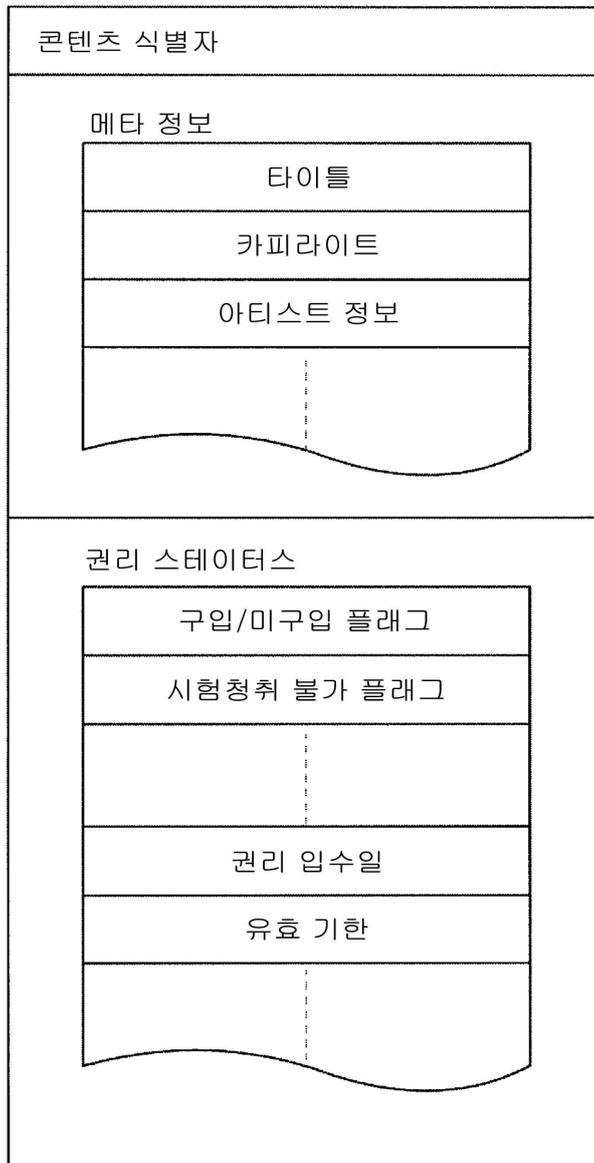
콘텐츠 식별자	휴대용 콘텐츠 파일	재생 장치용 콘텐츠 파일
001	KCON1	CON1
002	KCON2	CON2
003	KCON3	CON3

도면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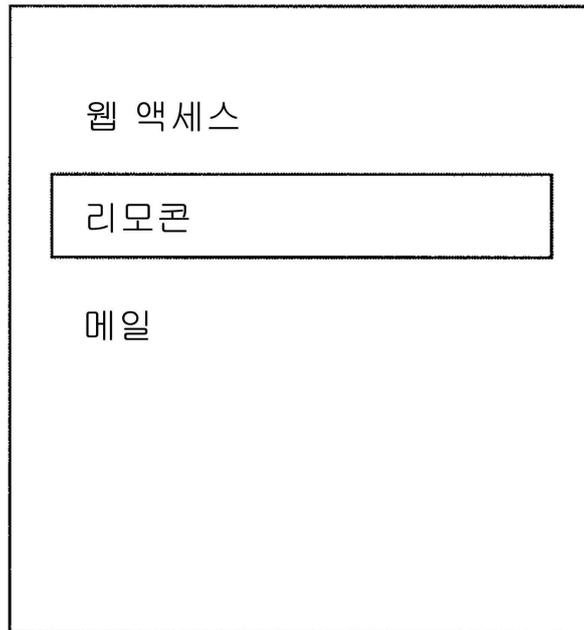


도면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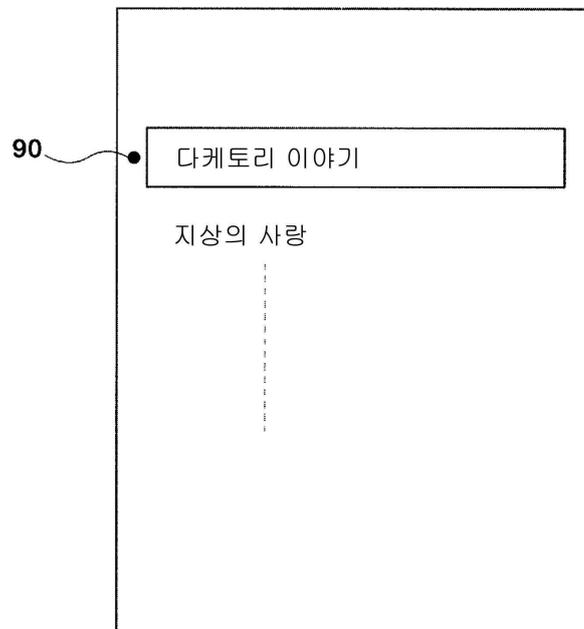
권리 데이터의 포맷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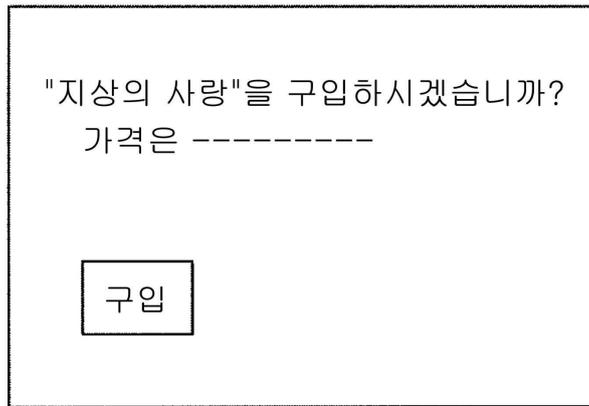
도면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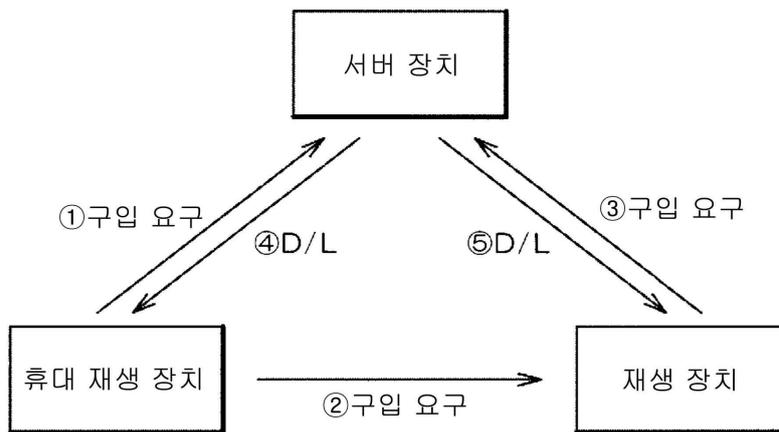
도면1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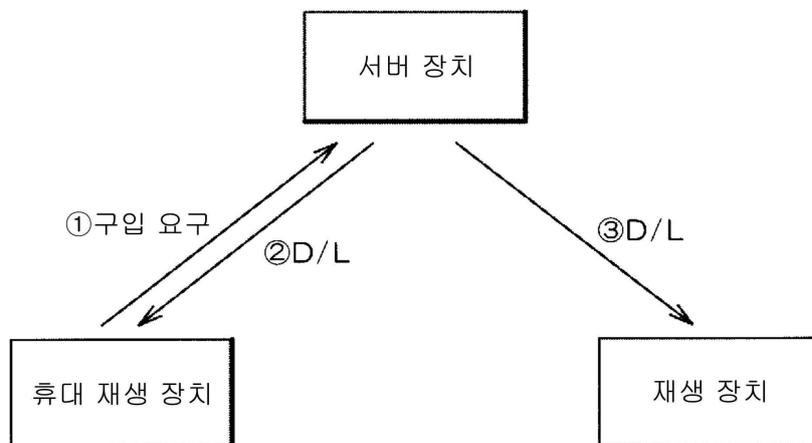
도면11



도면12a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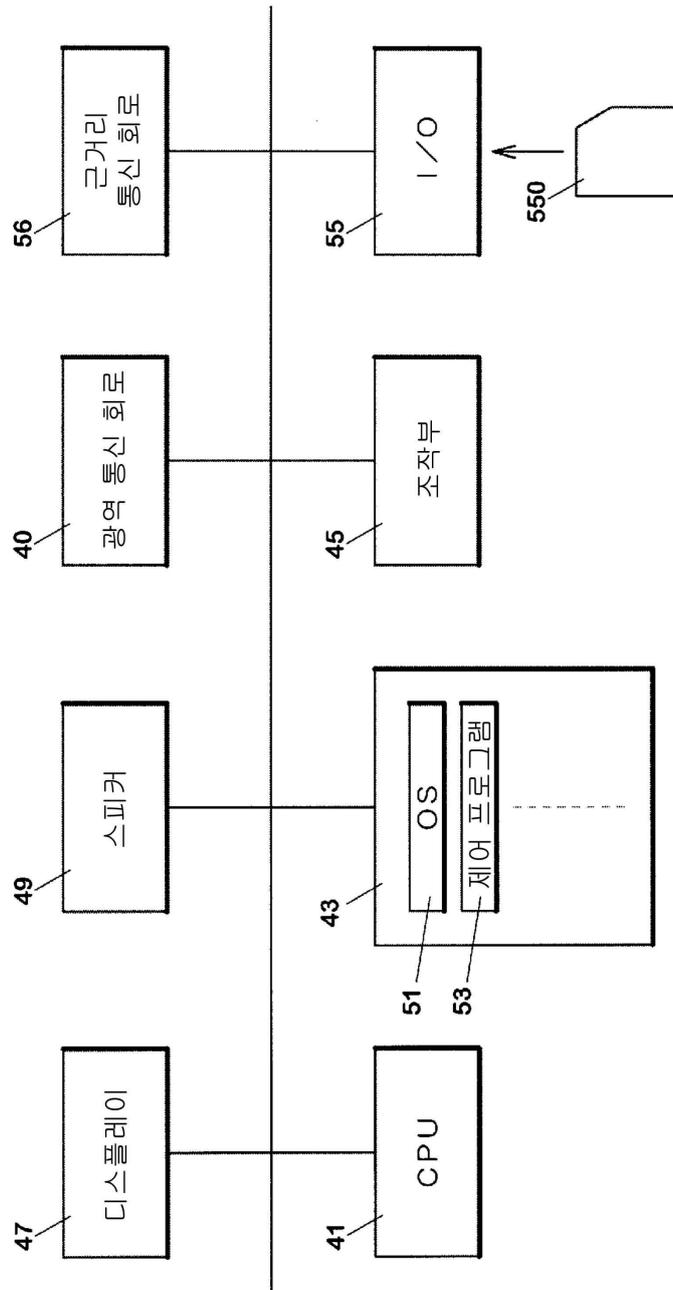


도면12b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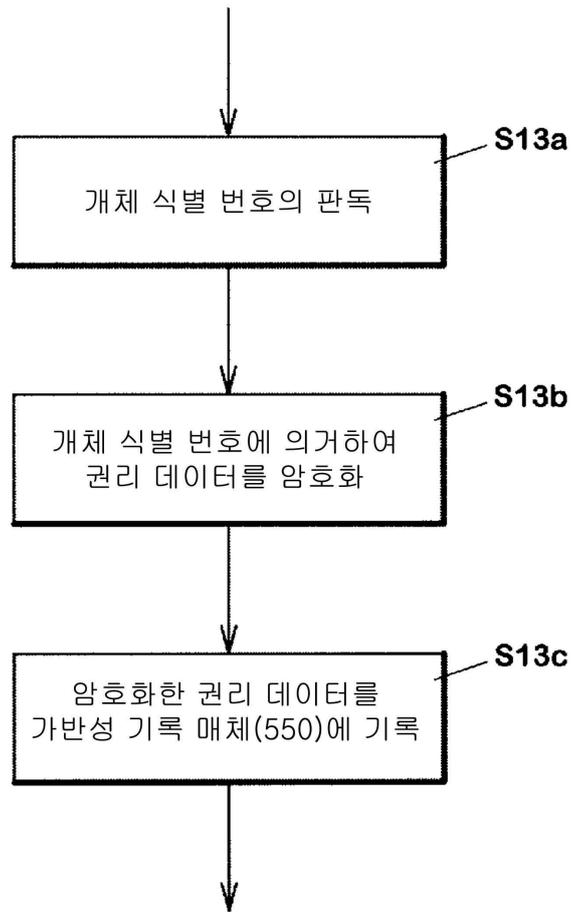


도면1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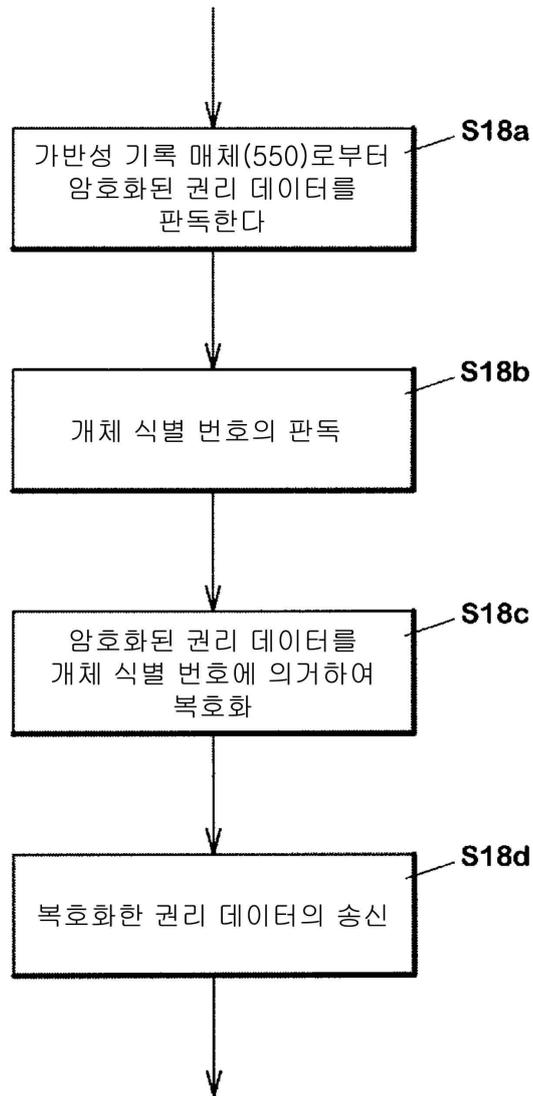
휴대 재생 장치(4)의 하드웨어 구성



도면14



도면15



도면16a

에브리싱	315241	권리 데이터
------	--------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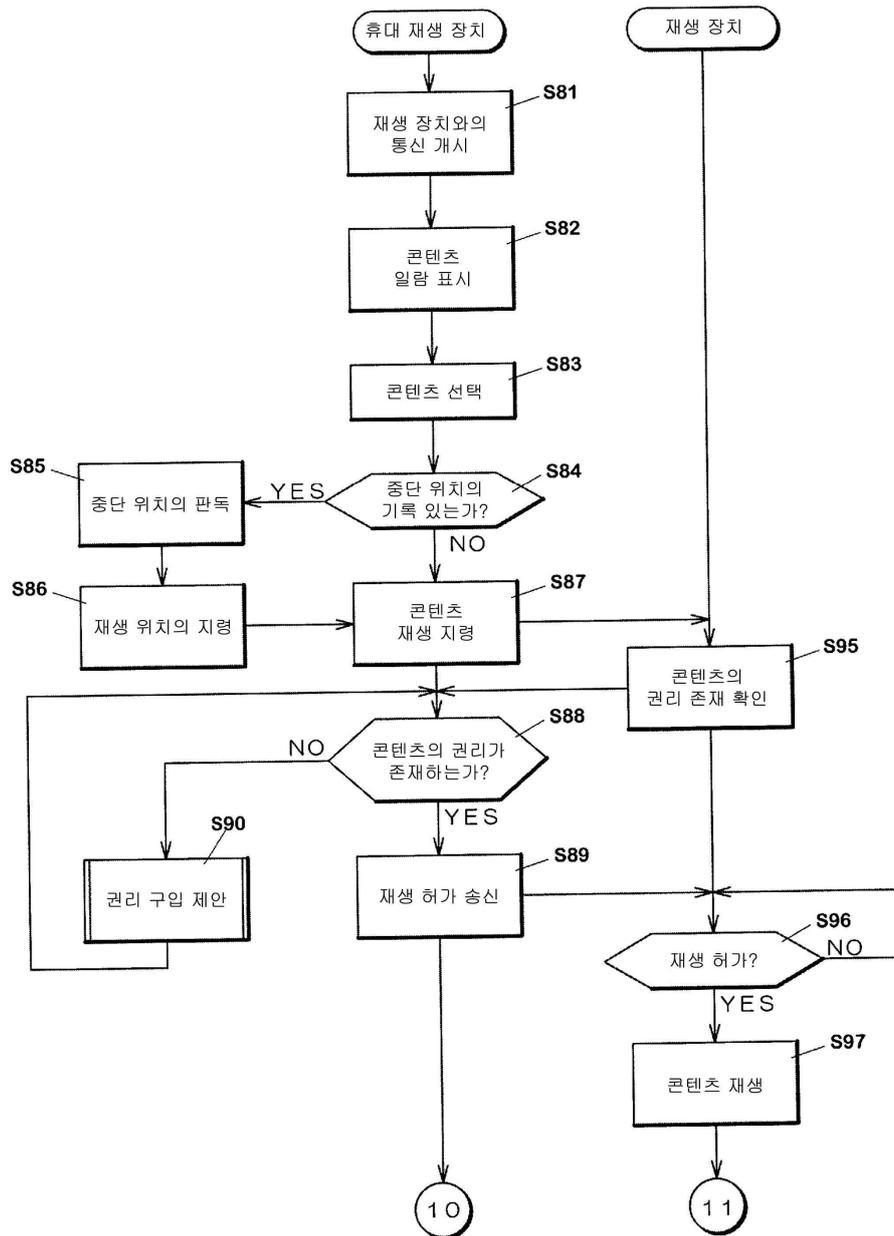
도면16b

14302152	개체 식별 번호
----------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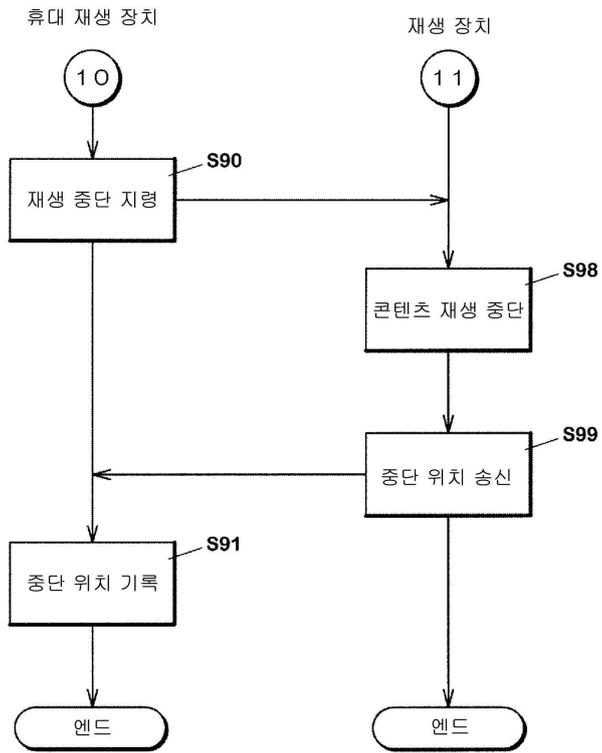
도면16c

에브리싱	81577213	암호화 식별 데이터
------	----------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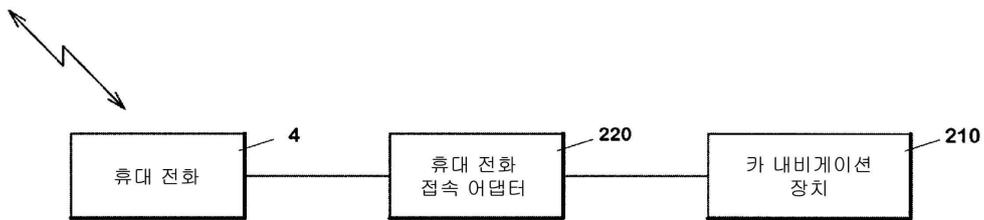
도면1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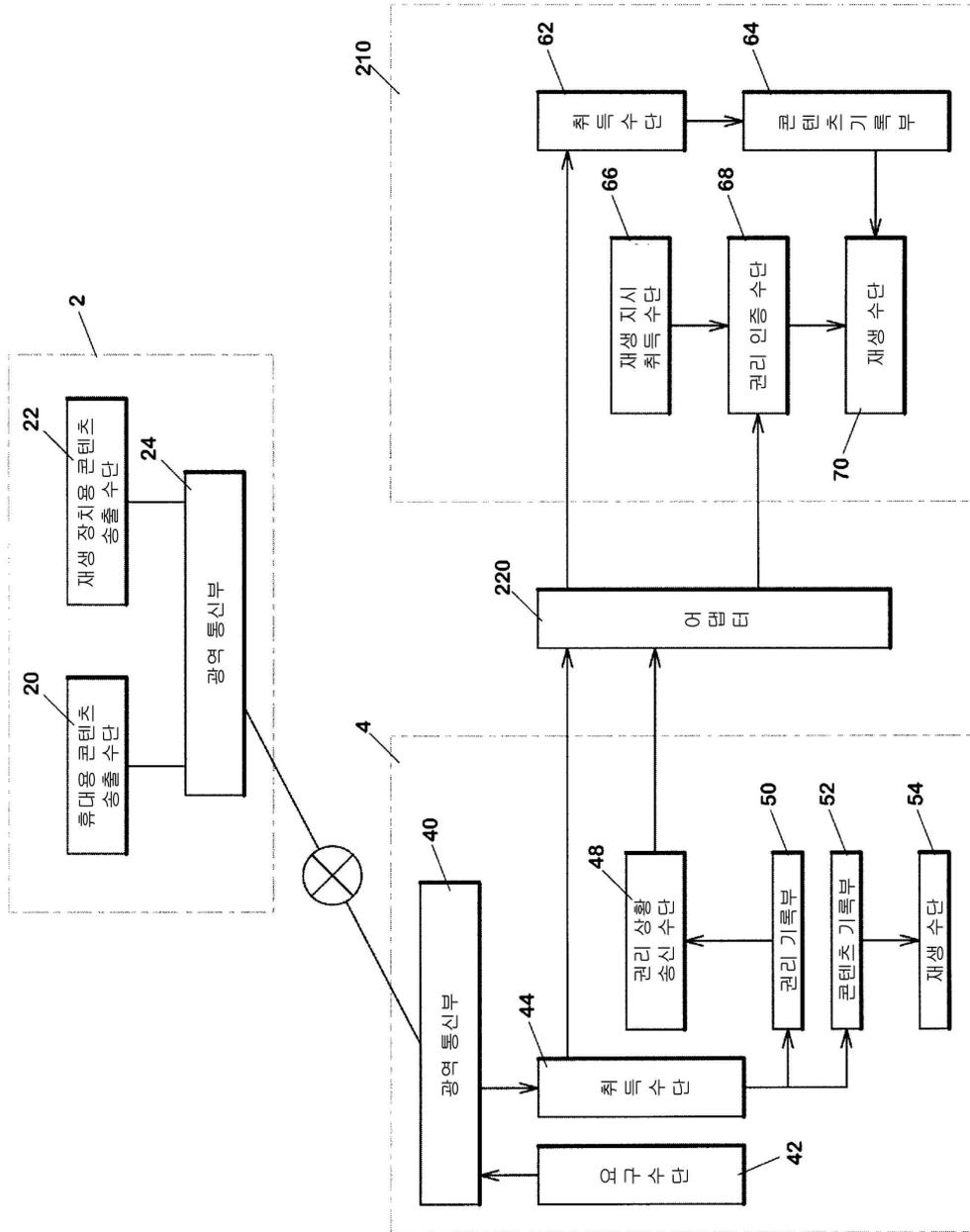
도면1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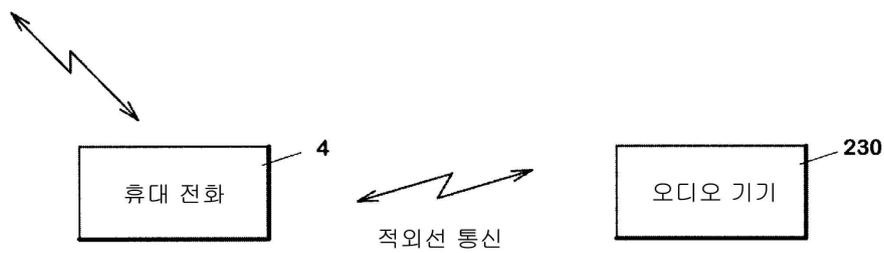
도면19a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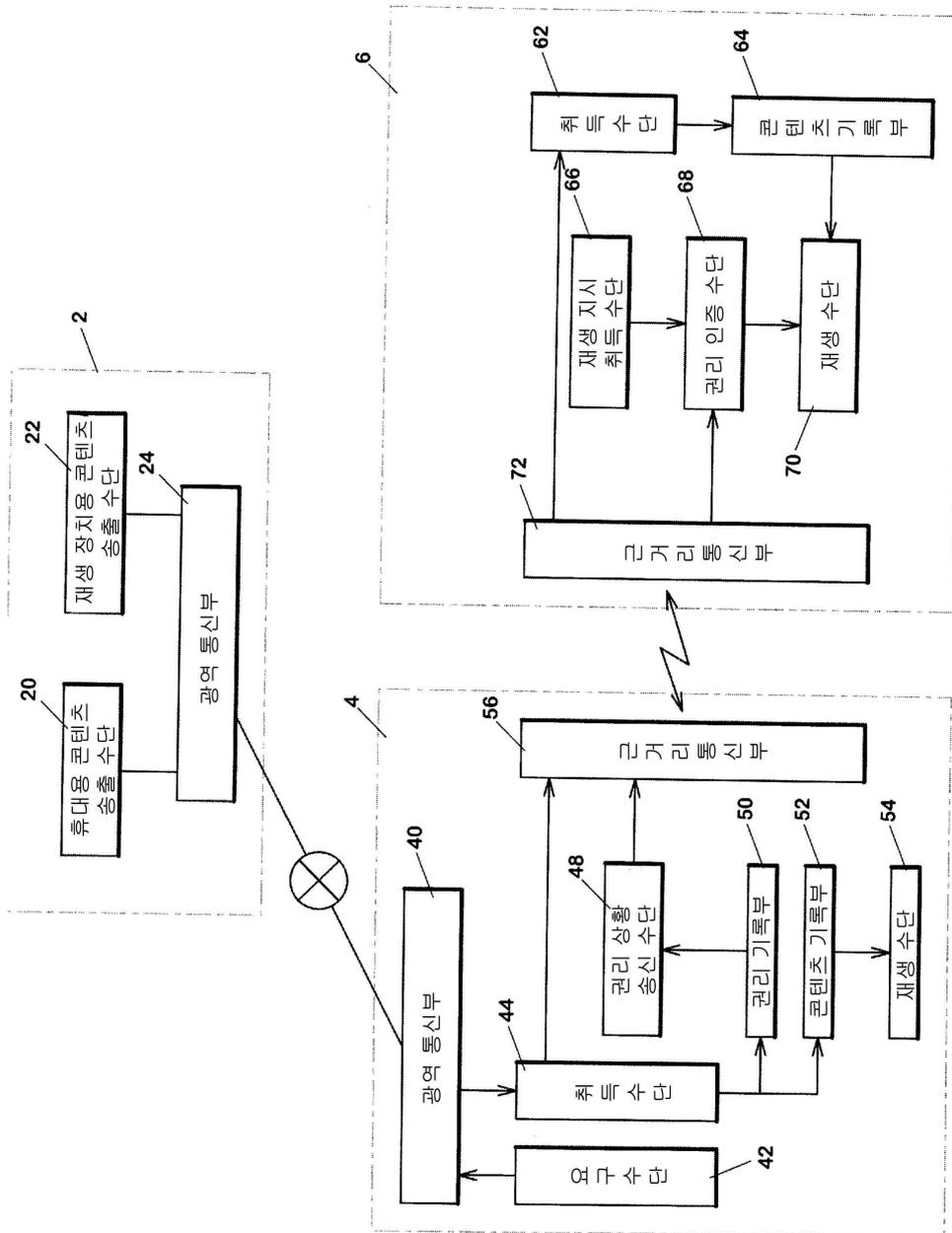
도면19b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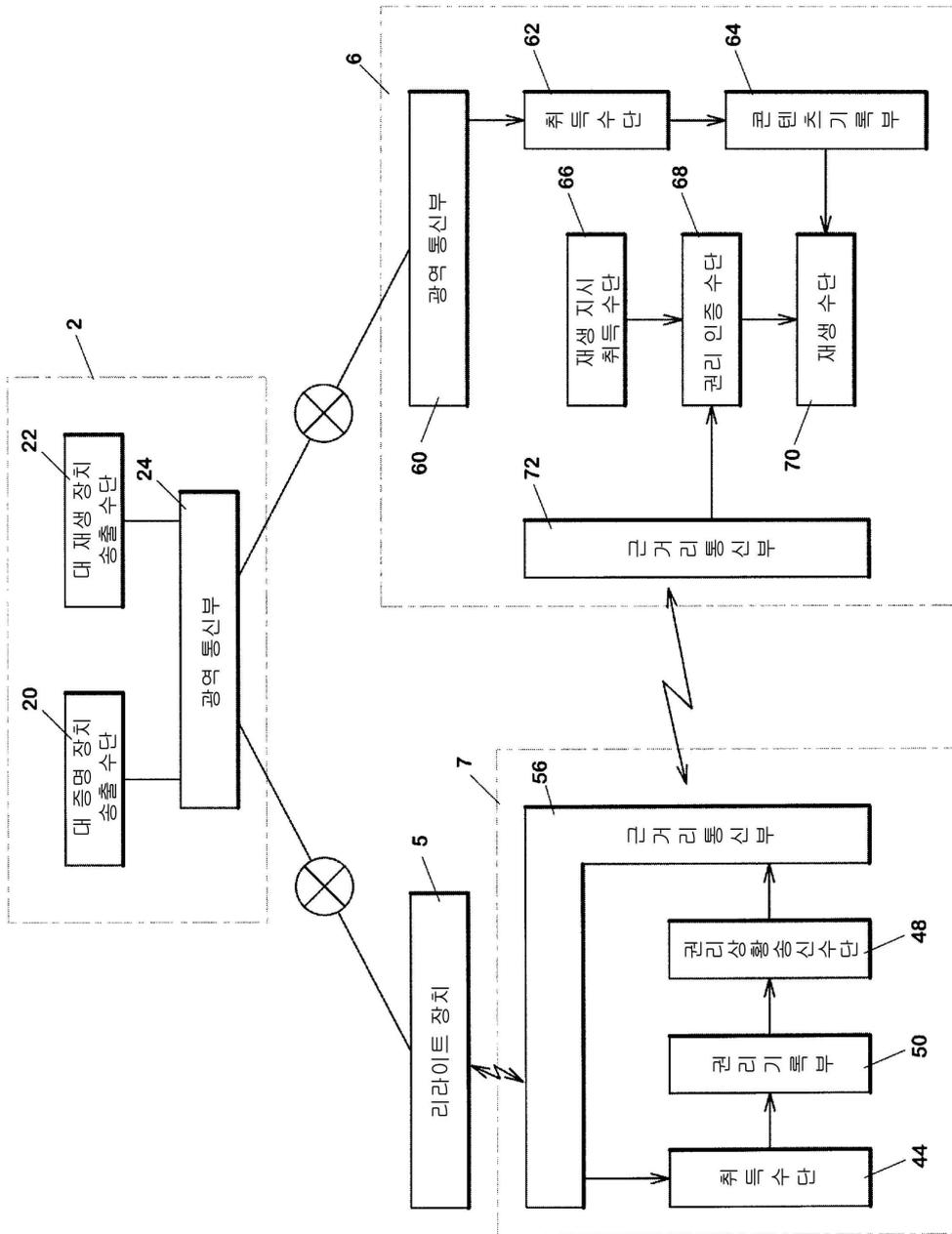
도면19c



도면19d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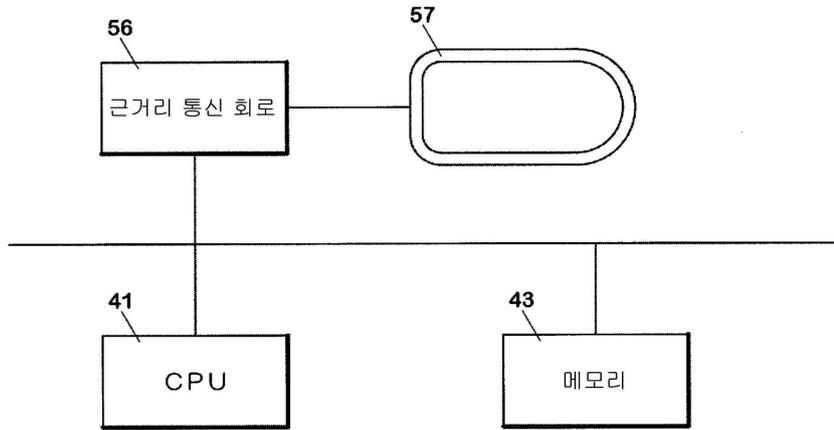


도면2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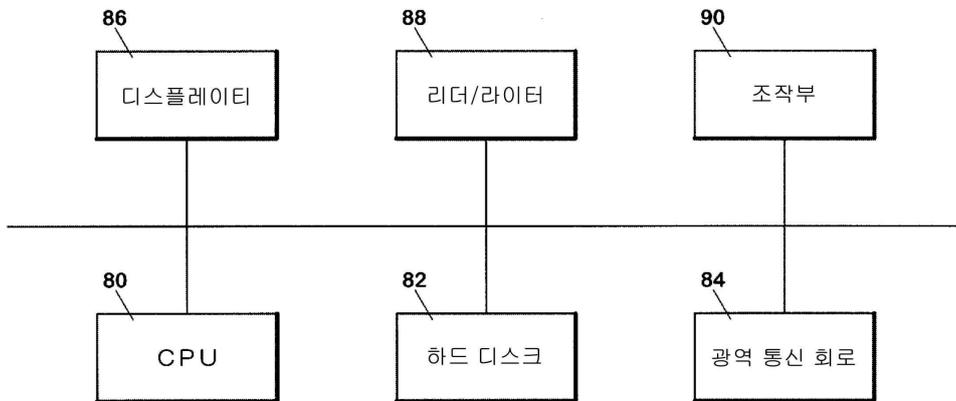


도면21a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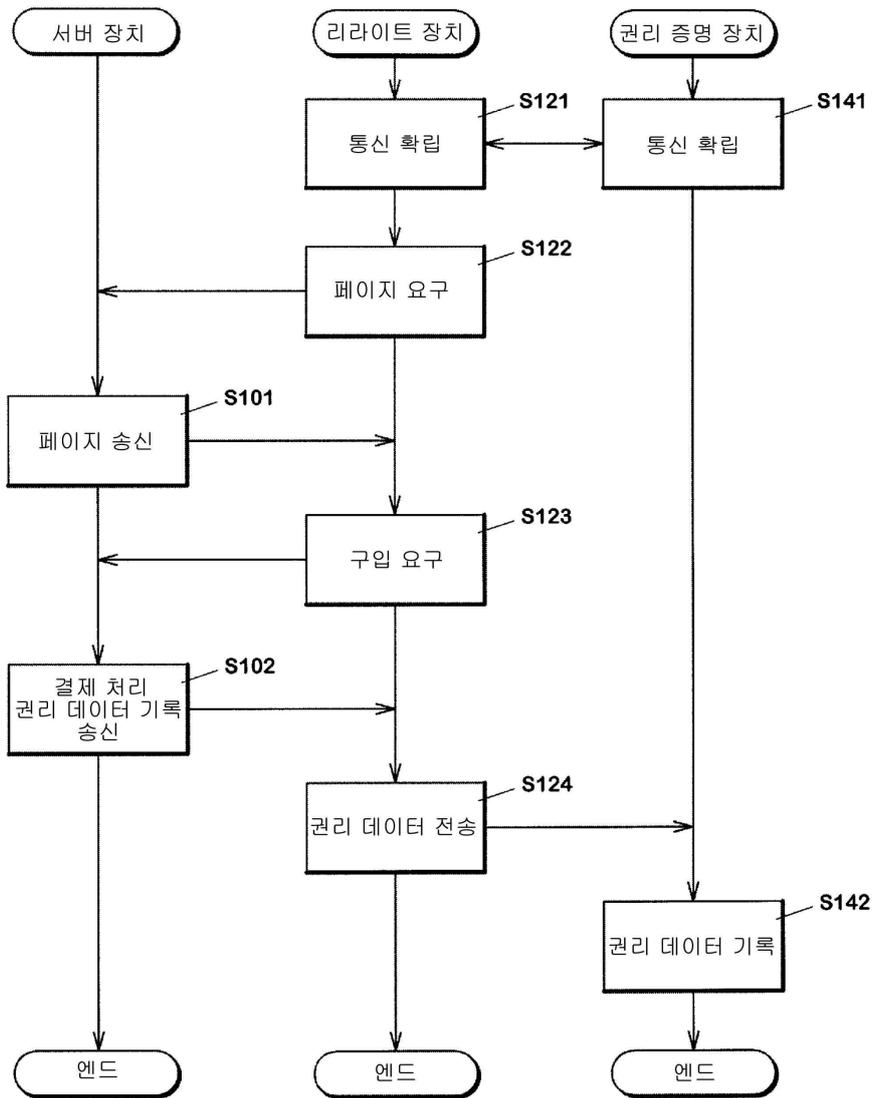
권리 증명 장치(7)의 하드웨어 구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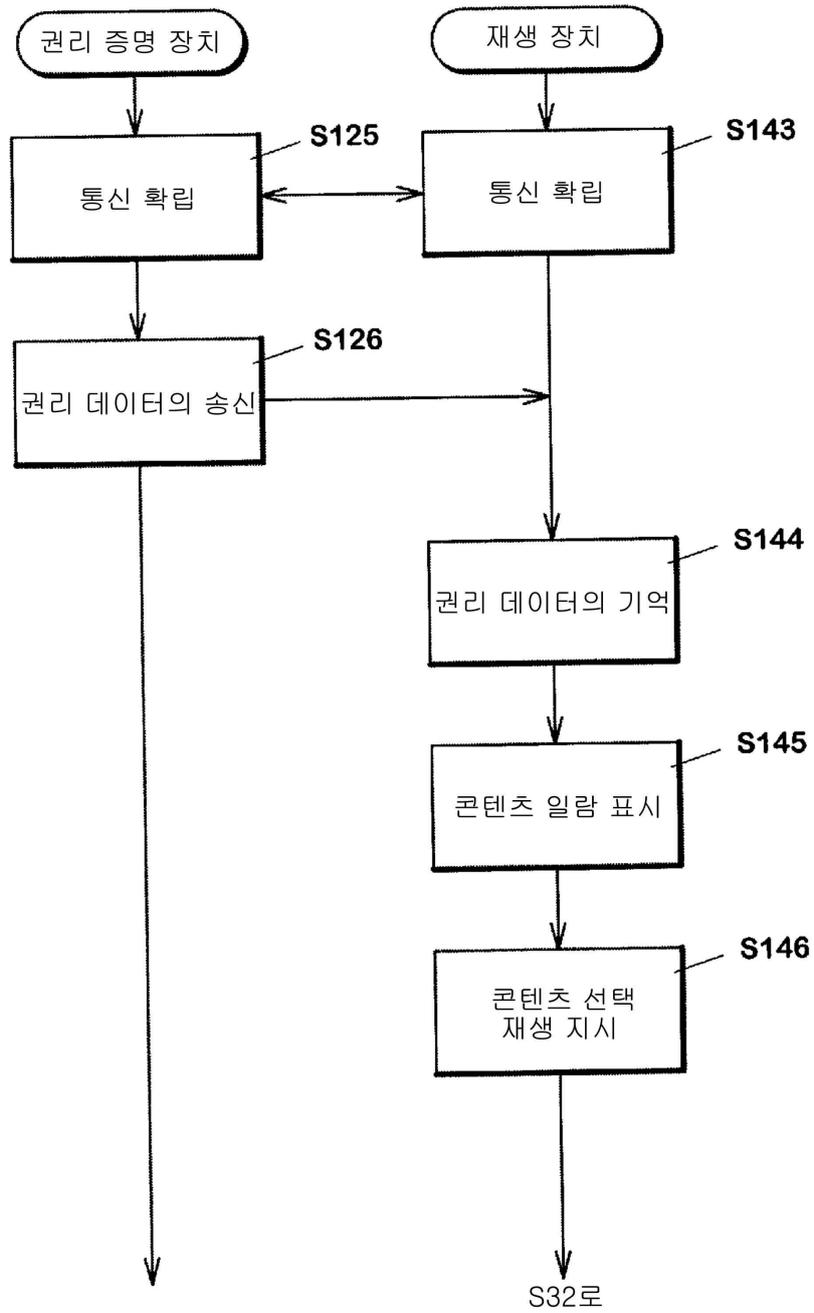
도면21b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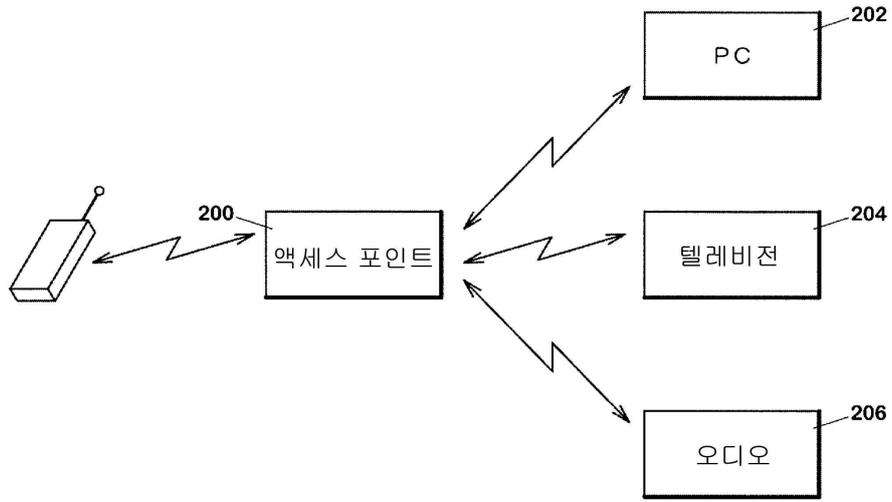
도면22a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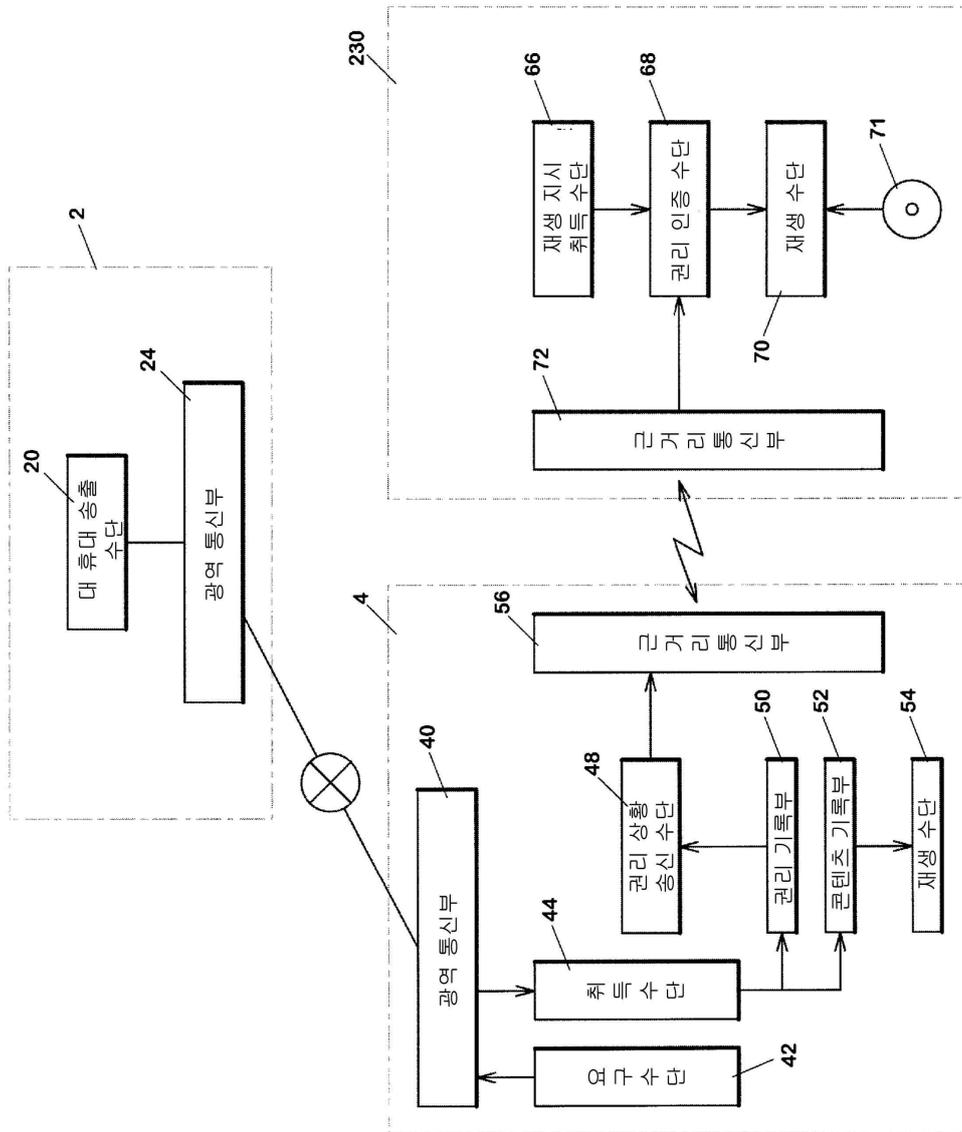
도면22b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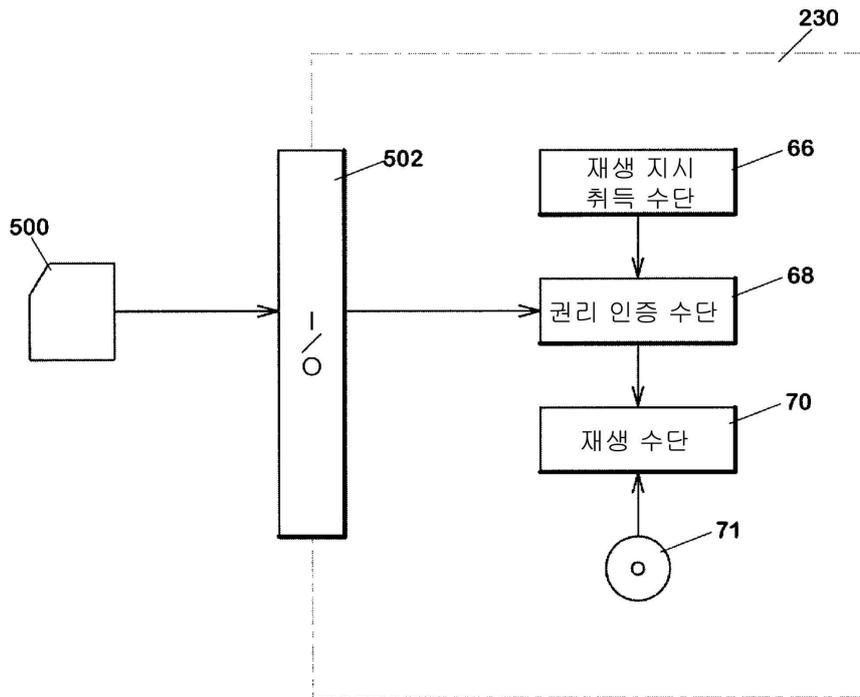
도면23



도면24



도면25



도면26

